

제390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8월20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29)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4)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0)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0)
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4)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46)
8.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918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2)
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8)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0)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5)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57)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4)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4)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2)
1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1)
18.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43)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5)
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6)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53)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8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3)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6)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58)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1)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24)
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7)
2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6)
3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50)
3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051)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8)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9)

3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5)
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12)
3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7)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9)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3)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83)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2)
4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3)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24)
4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14)
4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3)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56)
46.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08)
4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12)
4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6)
4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21)
50.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198)
5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891)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0)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0)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15)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9)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02)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23)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2)
5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1)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2)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0)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2)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3)
6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13)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14)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26)
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4)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97)
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9)
70.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2)
7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72.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73. 업무보고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9)	6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4)	6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6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6
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424)	6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6)	6
8.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8)	6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2)	6
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6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	6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5)	6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7)	6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4)	6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4)	6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2)	6
1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	6
18.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3)	6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5)	6
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6)	6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3)	6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6)	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	6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6)	6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8)	6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	6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6
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7)	6
2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	6
3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6
3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1)	6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8)	6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9)	6
3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	6
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2)	6
3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7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9)	7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7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3)	7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2)	7
4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	7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4)	7
4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4)	7
4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7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6)	7
46.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7
4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7
4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6)	7
4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1)	7
50.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7
5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1)	7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0)	7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0)	7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5)	7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9)	7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2)	7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3)	7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2)	7
5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1)	7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2)	7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0)	7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2)	7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3)	7
6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3)	7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4)	7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6)	7
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4)	7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7)	7
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9)	7
70.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원준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2)	7
7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7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72.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7
73. 업무보고	7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박선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 2020회계연도 결산의 건 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추진현황 보고 및 업무보고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과 청원,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지난 16일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은 더욱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중한 자세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얼마 전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과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불과 세 달 사이에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해군에서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폐쇄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결국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결과까지 유사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군의 성 군기 관련 사건과 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보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군이 뼈아픈 성찰을 통해 성군기 확립과 성폭력 등 군 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과 청원 그리고 국방부 등 각 소관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결산 심사의 본래 의미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셔서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측도 이번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해 소관 사업들의 예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점검받는 계기로 삼는 한편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겪었던 애로 사항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장병들의 부실한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중요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안보와 국방에 미칠 큰 영향을 감안하시어 생산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 등 4개 소관기관의 기관장 외에도 해군참모총장이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회의 강대식 위
원님을 이채익 위원님으로 개선하고, 법률안심사
소위원회회의 이채익 위원님을 강대식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
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29)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44)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08424)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6)
8.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222)
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375)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7)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564)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594)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702)

1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09731)
18.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09743)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775)
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826)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853)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0066)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8)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7)
2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11026)
3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3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1)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8)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089)
3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1105)
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112)

3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9)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3)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2)
 4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4)
 4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4)
 4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6)
 46.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4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군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 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4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6)
 4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121)
 50.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5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1)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0)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0)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5)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9)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2)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3)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2)
 5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281)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2)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0)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2)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3)
 6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3)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4)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6)
 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4)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7)
 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9)
 70.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예 관한 청원(조원준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2)
 7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72.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73. 업무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위원장 민홍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9항까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8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 한 병역법 개정예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1항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73항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 업무보고 등 7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의원**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일·중·러 등 4대 군사강국의 갈등과 대립구조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해군의 전력증강 및 안정적인 전력 유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함정 취득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함정의 품질 관련 이슈로 인해서 해양 안보와 해군 전력증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수출의 품질 보증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우리나라 전문기관이 참여하지 못해 다른 나라의 민간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핵심 기술인 함정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민간전문기관 활용을 결정하였으나 후속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함정의 품질관리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인 선급이 참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진국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민간전문기관인 선급을 참여시켜 함정의 품질 제고, 함정건조

효율성 증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자 검사를 통해 해군 전력 증대와 국내 함정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윤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의원**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국방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안규백 위원님, 민홍철·김병기·김진표·하태경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가를 지키다 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국가가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유가족에게 미력하나마 위로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한 법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나 현실은 오른손 손가락이 잘려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작게 절단되었을 경우, 한 마디보다 작게 절단되었을 경우 기준 미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나라에서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다치면 너희 아들이냐고 묻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병들은 기준이 너무 높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제도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현행법은 사고·부상 정도의 판단 기준인 심신장애 판정 기준과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안은 현행 9개 등급에 불과한 심신장애 판정 기준을 14단계로 세분화하여 재해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확대하자라는 법안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

부는 예산을 이유로, 국방부는 현행법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충분하다면 청년들이 곡소리를 내겠습니까?

‘군대에서 다치면 평생 고생한다, 군대에서 다치면 나만 손해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지켜 주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이 다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군대 가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군대에서 다쳤다면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지며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방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의원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삼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를 준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입법상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 국방부마저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국방부에서는 ‘노조가 정치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상급 감독기관인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가 있다’ 이런 해괴한 논리,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 때나 나올 논리를 가지고 국방부나 관계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것들은 이미 법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용역을 주고 시간을 끌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2건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재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로 전달 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서 제정되어 내년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완비 및 예산 편성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는 데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또 사업 첫해인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탐문활동이 극히 제한받았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4만 5000명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실제 찾아 드린 것은 18%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다 넘으셨기 때문에 매년 약 1만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 주는 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간을 연장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이 정도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이 정도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해수호 장병들의 경우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체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 경력 경쟁채용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설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7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전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전군인들의 이러한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전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한 국방부장관 소속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34만 명 월남전 참전군인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은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욱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국방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73항 국방부 소관 업무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관련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시작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훈련의 일부는 FOC 조건 하에 시행하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진전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하여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알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과 군 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정의와 인권 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하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합동군사대학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으로 조정하고, 총장의 자격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또는 장성급 장교로 개정함으로써 신분과 관계없이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하여 국립대학교로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방위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소요 결정을 하기 전에 군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품 간 비교를 위한 복수낙찰자 선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하게 다양하게 경험하는 기회를 군에 제공함으로써 무기체계 운용개념, 요구 성능 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2개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 예산현액은 34조 7892억 원이며 총 33조 6087억 원을 집행하고 5108억 원은 이월, 6697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총 321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351억 원을 수납하였고 866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66억 원은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조 628억 원이며 이 중 32조 1502억 원을 집행하였고 4151억 원은

이월, 4975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151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3%이며, 전년 대비 40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시설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해외구매 장비의 조달기간 장기화 등입니다. 불용액 4975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전년 대비 23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기타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총 7061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7335억 원입니다.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6551억 원을 지출하였고 451억 원을 이월하고 33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51억 원은 한미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333억 원은 공자기금 상환 이자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총 87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929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등에 8034억 원을 지출하였고, 506억 원을 이월, 138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506억 원은 총 사업비 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준공정산 잔액 등으로 발생한 138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총 3조 5351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3조 4481억 원을 지출하고 87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215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장학과 취업활동지원 등에 3673억 원,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에 1762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62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16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년 말 국방부 자산은 234조 4245억 원이며 주로 토지·건물·입목 등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232조 7230억 원으로서 군인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장기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1조 7015억 원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36건이며 이 중 부서관 운용률 제고 필요 등 3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군인연금기금의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5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현안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관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0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신청사건 조사, 진실고백운동, 시민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 국가보고서 채택, 국제법과 인권규범 준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거사 조사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조사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위원회가 수행 중인 조사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여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기록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조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활동기간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

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결산은 일반회계 단일회계이며, 2020년 2월 국방부로부터 이체받은 예산 77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총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7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7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57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800만 원은 이월, 17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억 78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3.6%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 17억 3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22.4%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2020년 4월 채용 직원 임용 완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2020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산은 총 13억 원이며, 주로 보증금 등 유동자산과 구축물·비품 등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채는 없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석환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요약설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정석환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1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억 7300만 원 중 서울청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계약 관련 변상금 13억 1000만 원은 감사원 변상 판정 결과 변상 책임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63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입니다.

두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32억 7500만 원으로 90.2%는 집행하였고 228억 5100만 원(9.8%)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228억여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동원훈련 취소,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교육 전환 등에 따른 병역의무자 여비, 사회복무요원 교육비 등입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20년 말 자산은 3777억 3000만 원으로 주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113억 1900만 원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등입니다. 순자산은 3664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건수는 총 11건으로 이 중 사업의 법적 근거 사전 검토 필요 등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병역의무자 여비의 적정 편성 필요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과 업무 보고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도전적·혁신적 국방 R&D 구현,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716억 원이며 740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416억 원을 수납하였고 4986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계약 정산잔액 등이고,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 등으로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5조 7635억 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59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785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97.9%인 15조 7432억 원을 지출하였고 202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28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 현액의 97.9%를 집행하여 개정 이후 최고의 예산 집행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27조 6969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1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건수는 총 36건이며, 이 중 K2전차사업 변속기 사양 확정 등 2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보라매 연구개발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리 등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선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39건의 법률안 중 주요하게 검토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군기교육을 할 경우 국외에서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의결 등을 할 때 정상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법성 심사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징계령에서도 근무성적을 정상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인물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날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을 격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념일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2항 기동민 의원님과 이채익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군인 출신이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 임용 최고 연령의 제한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제대군인을 채용함에 있어 군복무로 인한 실질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 연령의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고, 4쪽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입니다.

진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정도를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율은 일반 국민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24.8%로 나타났습니다.

미충족 의료 경험의 주요 원인으로 근무 여건에 따른 시간 부족, 부대의 분위기인 군 의료시설의 긴 대기 시간 등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근무 여건 조성, 경직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5쪽, 일반장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뢰탐지기 2종의 구매를 추진하면서 1차 연도인 2019년에는 2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차 연도인 2020년도에 나머지 계약 금액 24억 3715만 원 전액을 타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지뢰탐지기 구매사업을 3년여 앞당겨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국방부는 회계연도 중 비용이 수반되는 계획을 신규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예산 절차를 충실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국방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관사 입주자에 한정하여 제공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독신자 숙소 입주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사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등급 제7급으로 인정하던 것을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이등급을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려는 것으로 병역 면탈의 여지를 줄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차별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 12쪽입니다.

보상금 예산 과다불용 관련입니다.

5·18조사위는 2020회계연도에 보상금 예산액 5500만 원 중 93.6%인 514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금년의 경우는 7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이 없어 보상금 예산 1억 2000만 원 중 상당한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8조사위는 보상금 예산 집행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다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입니다.

요약본 15쪽입니다.

국외 병역기피자 대책 마련 필요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 500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중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 16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병역기피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집행도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외 체류자 및 국외 이주자를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 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외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예산 질의에 앞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도 한미연합훈련 지금 실시 중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훈련을 좀 축소해서 실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정부가 연합방위태세 유지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화시켜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투참모단 요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증원 요원은 조금 줄여서 밀집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증원 요원들을 좀 줄이고 전투참모단은 계획대로 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연합훈련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최근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8월 1일 날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또 북한 측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통한 정기 통화 시도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북한이 일본 측에 동해안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든가 또는 항행 통보를 발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난 16일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훈련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 잘못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사실 미사일 발사 정후로 보이게 되겠지요.

현재 북한에는 특이 동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전에 보면 통상 연합훈련 전후에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많이 도발한 사례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을 적극 활용해서 군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국방부장관 서욱 예, 보안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미 공조하에 명확하게 감시정찰자산을 운용하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은 훈련과 동시에 군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8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반군 탈레반이 민주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함락시켰지요. 그리고 대통령도 도피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저는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력,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관님은 이걸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를 갖추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 태세 또 정신 전력, 강한 훈련, 한미동맹 이런 것 등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와 능력과 태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의 군대는 의지가 가장 부족했던 것 같고 따라서 태세와 능력도 부족했지요.

우리 군도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 전력에서부터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많은 여야 위원들이 공군이 중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와 각군은 군대 내에서 뿌리박힌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도 최근 해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군총장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군총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뭔지 좀 한번 듣고 싶네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해군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유족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분야를 낱알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딸의 죽음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가족의 말씀을 되새기며 앞으로 해군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흡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재임 기간 동안에 군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없애는 장관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강한 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고 군의 문화를 선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입장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난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제도개선 또 문화의 어떤 개선 이것을 추진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위계적인 군의 조직 문화, 구성원들의 인식, 매뉴얼의 보완, 현장에서의 적용 이런 것 등등이 아직 미흡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아주 발본색원할 수 있게 장관님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공적 중의 하나가 선진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나라로 가신 지 3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절규하고 있는 공군 이 중사님의 정말 피 끓는 절규, 이것을 좀 대신 얘기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딸을 둔 아버지로서 딸을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낱알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지금 공군 여중사 사건이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또 해군 중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많이 은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이채익 위원**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9월 달에 모든 것을 다 종료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성과도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위원회도 중도에 5명이나 하차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국방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이채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사실은 굉장히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낱낱이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기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또 특임군검사를 임명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내용을 수렴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꽤 많은 인원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제 의견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청취하고 듣고 의견 수렴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아마 거기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국방부장관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국방부장관의 의지 못지않게, 밑의 지금 관련된 수사 인력들이 국방부장관의 의지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족들이 근본적으로 이 재판 또 이 수사 과정을 지금 매우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위원장도 제가 봤을 때, 박은정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록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군 중심의 이해를 하고 있고 피해자 중심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나는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특히 박은정 위원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성이 조금 결여돼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고요.

오죽하면 이 중사 아버지가 재판정에서 담당 판사에게 ‘무죄를 때려 달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군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 수사 대상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26명입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현재 기소된 사람은 13명입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부실 수사, 초동 수사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유족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 부분 때문에 유족의 건의를 받아서 지금 특임군검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 관해서 수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유족의 뜻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를 임명했지만 지금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지금 신옥철 소장 나와 있습니까?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옥철** 예.

○**이채익 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아니, 거기 앉아서……

지금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지요?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옥철** 맞습니다.

○**이채익 위원** 지금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옥철** 아직…… 제가 8월 2일부로 보임이 됐는데, 다음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이 유가족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옥철 소장은 인참부장 하셨지요?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옥철** 예, 맞습니다.

○**이채익 위원** 군인사법 21조에 병과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옥철** 2년입니다.

○**이채익 위원** 2년이지요?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옥철** 예.

○**이채익 위원** 그런데 2018년 전익수 대령을 법무실장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임기가 끝나니까 공군 최초로 장군으로 진급시켜서 재임명을 또 합니다. 직무대리에서 정식 실장으로 또 발령을 내고……

공군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병과장을 한 인물이 있습니까?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옥철**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법무실장 차례가 아니었고 그 중간에 대령이 한 분 있었는데 징계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전역하면서 지금 법무실장이 좀 일찍……

○**이채익 위원** 지금 군에서는, 도대체 전익수 법무실장은 어떤 힘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고 또 군인사법에 나와 있는 병과장 임기를 초과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고, 하루속히 유가족들 위문하고 또 유족들 애끓는 여러 가지 하소연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방부장관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고 장례도 못 치른 유족들의 이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깊이 좀, 장관께서 그저 보고만 받으시지 말고 직접 좀 챙기시고 이 수사 부분에 추호도, 또 발표에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강력히 제가 촉구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해군 여중사 사건에 관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나 이채익 위원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나름 공군이 중사 사건이 생기고 나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전 군 간부에게 교육을 시키고 아마 지시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런데 또 해군에서 여중사 사건이 발발했다, 왜 그랬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공무원 중에도 전 부처에, 특히 외교관이나 이런 분야는 남성 외교관 시험 합격자보다 여성 외교관 시험 합격자가 훨씬 많아지고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경찰도 굉장히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군에서만 이런 불행한 사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계속 생길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 해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면 해군이 국방부가 작성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다 했더라고요,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런데 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2차 가해에 대하여 군 간부들이나 부사관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2차 가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젊은 세대의 피해자들이 ‘도저히 더 이상 군 내에서 생활할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이 이걸로 인해서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군 내의 성폭력, 이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인데, 이게 지난번 매뉴얼을 교육시키시면서 형식적이고 문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했지 그것을 군의 간부나 부사관들이 제대로 피부로 느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보니까 지금의 시스템과 제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군의 소위 SAPRO 제도를 참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미국의 SAPRO 제도에 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SAPRO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김진표 위원** 그런데 왜 잘 아시면서 이런 문제가 반영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SAPRO 제도에 의하면 이것은 2005년부터 해외 모든 파병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주둔지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성폭력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성폭력대응담당관이 900명 그다음에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1만 1000명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미국의 20분의 1이고 그다음에 피해자옹호관은 1000분의 1이야. 여기서 근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운영이 국방부 산하에 완전히 독립된 전담기구로서 SAPRO를 만들었다고요. SAPRO의 우리말 해석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기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단절된 상태에서 정보가 가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 신고제도의 대부분은 리스트릭티드 리포팅(restricted reporting), 제한적 신고로 돼 가지고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면서 피해자를 먼저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지

원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일체 모든 것을 극비로 다 처리하고 가해자는 찾아서 징벌하고, 그리고 5년 안에 피해자에게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느냐고 다시 물어서 안 원하면 이 기록 자체를 영원히 삭제해 버린다고요. 그것도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도 이런 제도적 보완이 갖춰지지 않으면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우리 젊은 세대 특히 여군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성문화나 이런 인식에서 보면 일단 2차 가해가 일어나게 되면 도저히 그 조직에서 자기는 적응할 수 없고 또 살 수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의 꿈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민간하고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진표 위원 지금 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위원 중에 무려 5명이나 사퇴를 했어요. 사퇴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사퇴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국방부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것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사퇴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과중하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이렇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5명의 민간합동위원회 위원들이 사퇴하도록 기구를 운영하는 형식적이고 당장 앞만 모면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 매뉴얼을 했으면 이것을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각군 단위부대에서 토론을 통해서 부사관들이나 위관장교나 영관장교들이 ‘그렇겠구나. 우리 젊은 여군들이 이것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공감하도록 하는 제도를 교

육을 시켜야 이게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입는 군의 신뢰 상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군총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이 진수됐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것이 3000t급 이상의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언론에 홍보됐던데, 전 세계에서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나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10개국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8개 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

그런데 우리 언론에 의해서 보면 북한이 SLBM을 이미 발사시험에 성공했고 또 이것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특히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군총장으로서 북한의 능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군은 앞으로도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고 주변국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유는 이미 북의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보면 핵추진잠수함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면 완성 단계에 있는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발표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GDP가 북한의 54배입니다. 어떤 것으로 봐도 우리 경제력이 50배 이상 되는데 왜 군은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가 북에…… 핵무기, 장사정포, 사이버전력, 이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일이 모든 국방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해군에서는 핵잠수함의 추진이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과만 협의가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핵추진잠수함을 세계 각국이 깜짝 놀라게 북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해군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위원장 민홍철 정리해 주시지요.

○김진표 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해군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오늘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천안함 영웅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해나 양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친을 잃었는데 그 슬픔을 딛고 해군 장교로 들어왔다, 그 과정을. 그래서 교육 마쳐서 해군 소위로 훌륭하게 임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생을 또 특별대우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해군총장이나 또 관련 사람들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이어서 해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 있잖아요. 그다음에 훈령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법하고 훈령 중에서 뭐가 우선합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법이 우선합니다.

○신원식 위원 당연히 법이 우선하지요.

해군총장님, 군인복무기본법 43조에 의하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성폭력 행위 인지 즉시 보고 및 신고한다…… 군인복무기본법 43조에 의하면 해당 주임상사는 바로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보다 하위규정인 부대관리훈령 244조에는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 고려해서 피·

가해자 분리 또 피해자 및 대리인 동의 없이 신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 및 누설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훈령을 적용해야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먼저 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덜 됐든 법과 훈령의 차이를 인지 못 했든 성범죄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임상사나 그 해당되는 부대장들이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님, 작전본부장님 하셨으니까 고속지령대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최전방 초소나 말단 초병이 만일 무슨 작전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고속지령대에 올리면 사단장, 군단장의 중간단계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보고할까요, 말까요’ 필요 없이 바로 합참까지 보고되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신원식 위원 그 지휘계통을 바이패스(bypass)해서 그렇게 빨리 보고하는 이유가 됩니까?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신원식 위원 성고충상담신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할까요, 말까요’, 중간에 누군가가 ‘야, 지금 공군에서도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공군총장이 해임됐는데 우리 나면 큰일 난다’ 이런 의식을 하는 중간 간부 하나가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중사가 덕적도라고 하는 고립된 섬에서 물경 74일 동안, 물론 그 주임상사 말로는 아까 훈령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자기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왜 구태여 주임상사한테 이야기를 하며 가족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인데요.

이것은 고속지령대하고 똑같아요. 일단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1명이 성추행하는 것을 내가 지나가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야, 내가 신고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망설이면 안 돼요. 고속지령대하고 똑같습니다. 지휘계통이 아니라 바로 성고충상담으로, 각 군 본부 및 국방부로 고속지령대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휘관이 조치를 하면 됩니다.

성추행 사건이 나고 성범죄가 났는데 지휘관이 지휘관 판단을 할 게 뭐 있어요? 빨리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이 들어서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면 되지 지휘관이 지휘관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신원식 위원 아니, 논란이 있을 수 없지요. 작전 같은 지휘관이 직접 책임지는 것도 최대한 빨리 보고해서 중간 지휘계통에서 왜곡시키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그것 보고하지 마. 그러다 피곤해’ 이런 것 얼마나 그동안 많았어요.

우리가 왜 고속지령대에서 선조치 후보고가 생겼느냐 하면 작전하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간첩 작전에 계속 실패하는 원인이 초동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작전지역 확대 방지를 하고 빨리 조치가 안 돼서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까지도 바이패스해서 초병이 바로 함참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 이후에 비로소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났는데 덕적도에 있는 중령 지휘관에다 또 2함대사 기지전대장에다, 2함대사령관에다, 해작사령관에다, 총장에다 어느 세월에 올라옵니까? 그래서 74일 동안 그 부대에서 그것 된 거예요.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물론 1차 가해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1차 가해도 잘못됐지요, 범죄의 원인이지요. 그런데 공군 부사관도 그렇고 해군 여 부사관도 그렇고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입니다. 만일 1차 가해 때문에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 전에 했겠지요, 극단적 선택을. 똑같습니다. 2개월 반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2차 가해, 버티고 버티다 견디지 못해서 했어요. 이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것은 반복됩니다.

보세요. 공군에서 2차 가해돼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장관님, 빨리 상위 입법과 충돌하는 부대관리훈령 244조 개정하십시오. 군인복무기본법 43조와 상충되지 않는, 43조는 지금 잘 나와 있어요. 인지 즉시 보고 및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디테일하게 지휘계통이 아닌 성고충상담계통으로 보고하도록, 2014년 육군의 사단장을 바로 수사한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위원장 민홍철 예.

○신원식 위원 그게 가능했던 게 17사단의 병영생활상담관이 바로 육군본부에 직보했기 때문에 그 직보를 받은 당시 육군총장이 중앙수사단장을 내려보내서 17사단장한테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수갑을 채워서 긴급구속을 하고 그다음 24시간 내에 긴급구속영장이 떨어져서 48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휘계통이 아니라 인지하면, 예를 들면 지휘관한테 먼저 보고했다 하더라도 ‘오케이, 나도 지휘계통으로 보고할 테니까 빨리 성고충상담 긴급보고 계통으로 보고해라’ 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 지시를 했으면, 지휘관이 특별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직접적인 지휘활동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신속한 보고행위를 하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작전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속하게 보고하면 크게 책임을 안 묻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신원식 위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난다……

그래서 별도로 훈령하고 이 문제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적절한 기회에, 다음 국방위 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 또 신원식 위원님 주신 말씀들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미 검토에 착수했구요. 피해자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 다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고충상담 계통에 신고하는 것 이런 등등을 다 열어 놓고 하는데 아까 신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계통에서 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 수사에 착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아까 SAPRO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요, 신원식 위원님 말씀 다 확충을 해야 되고요. 방금 장관님 말씀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한테 먼저 신고를 할 거잖아요, 호소를 하고. 그러면 지휘관한테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성폭력상담관한테도 먼저 할 수 있고요, 또 동료한테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최초 신고받은 사람이 어떤 계통으로 빨리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가 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신원식 위원 장관님, 여기 기본법에 ‘성폭력 행위 인지 즉시’예요. 인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라도, 옆의 동료라든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말고 그것을 인지한 모든 사람은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민홍철 하여튼 그것을 같이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장관님, 아프간 사태를 저는 보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75년도에 철수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아프간에서 반복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2001년에 아프간에 가서 1트릴리온(trillion)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만 1200조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군대만 지원한 게 10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처참하게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사실 전쟁이란 게 첨단무기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교훈을 다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철군하는 과정에서 보면, 바이든이 지난 4월 달에 아프간에서는 더 이상 미국인들의 생명을 잃으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철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렇게 도망치듯이 아프간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미국 군대의 모든 정보가 다 틀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것을 미국이 경험했습니다. 케네디 정부 이후로 린든 존슨이 베트남에 대거 군대를 보내고 막 참여할 때 전부 다 군대의 보고에 기초했거든요. 이게 다 허위였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 그래

가지고 대통령과 정치권과 국민을 다 속이고 보고를 해서 그 처참한 결과가 75년도에 쫓겨난 건데, 이번 아프간에서도 보면 미국 군대의 보고가 다 틀렸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평가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아프간의 탈레반이 무슨 인공위성이 있습니까, 초고도정찰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첨단 정보·감시·정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다 틀리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첨단 무기, 심지어 거의 10조 이상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군의 운영비만 해도 제가 볼 때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해군참모총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변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분석하고 또 경제력을 토대로 평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변국’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육해공군 총장님들이 미국에서 새로 만들었거나 세계적으로 첨단무기다 하면 그 말에 도입하고 이런 문화를 정말 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보·외교 또 군사전략 이런 것과 일치하는 군사력, 무기체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각군이 경쟁적으로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이건 정말 앞으로 5년, 10년 후의 군을 볼 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전쟁은 이렇게 첨단무기를 가지고 안 된다……

장관님, 미국 군대가 탈레반보다 무기 뭐가 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부족했나요, 탈레반보다?

○국방부장관 서욱 미국군 무기가 탈레반보다 부족한 무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엇그저께 CNN을 보니까 미국의 힘비라는, 그것 장갑차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힘비가 전투용 차량입니다.

○홍영표 위원 전투용 차량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홍영표 위원 아주 신형이더라고요. 아마 금방

출고·납품된 그런 험비 위에 탈레반이 타고 있어요.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아프간 군대에다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다 탈레반 손에 가 버린 것 아닙니까?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갔던 이유는 테러리스트의 근거지를 좀 없애겠다고 들어갔는데 지금 100배, 1000배 되는 것을 탈레반 손에 쥐여 줬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장관님이나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전쟁에 대해서 첨단무기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계속 성범죄 문제가 제기돼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이런…… 거기다 최근에 동병부대 아직, 동병부대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동병부대입니다.

○홍영표 위원 동병부대, 그 비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작 우리 군의 사기를 유지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놓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첨단무기 들여오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성범죄 문제는, 8월 3일 날 뉴욕타임스에 미국 군대 내의 성범죄 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룬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1분.

○홍영표 위원 미군은 16.5%가 여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체 군인 중에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7%에서 8%로 가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군들이 군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미군 여군 4명 중에 1명이 섹슈얼 어설트(Sexual Assault), 성폭행을 당한 경험 있다, 그리고 2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도 작년에 트럼프 때 무슨 법도 만들고 길리브랜드 법안이라고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고 이러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여군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진짜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들도 검토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장관님도 한 4월 달부터 몇 달 동안 이 성범죄 문제로,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우리 국방의 미래다 뭐다 이런 것 다 없잖아요, 지금. 지휘관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몇 달씩 하는 이런 군대가 어떻게 첨단무기 손에 쥐었다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이번에 대책을 세우고 제도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바꿀 건지 이번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공군에서 사건이 났는데 그 조사하는 사이에 또 해군에서 나고……

○위원장 민홍철 정리해 주시지요.

○홍영표 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장관께서 근본적인 어떤 제도개선, 더 나아가서는 군 내 병영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여군들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꼭 강구해 주고 철저하게 관계자들은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홍철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위원장 민홍철 답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몇 가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군은 미래에 대한 기획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2050을 설정해서 미래에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적절한 전력과 또 말씀 있으셨지만 정신력, 의지 또 한미동맹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 답아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부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저희가 고통이 있지만 위원님들 지금 지도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해서 건강해지는 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이번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은 저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공군 여중사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 사건 뉴스로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너무 놀라 가지고 바로 유족을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신 아버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라에 충성하라고 군에 보내 왔는데 성추행해서 죽게 만드냐. 이런 군대에 어떻게 우리 딸을 보낼 수가 있느냐’.

공군 여중사 사건이 5월 22일경이지요. 그리고 5월 27일 날 해군 여중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전 군대가, 국방부가 총동원이 되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2차 가해를 하지 말고 하는 지침을 다 내렸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河泰慶 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항명을 한 겁니다. 거부를 한 겁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제가 해군 여중사 꿈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해군 여중사 굉장히 고집도 강하고 소신도 강한 여군이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군인으로 살겠다, 본인이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방부가, 우리 군이 이 여군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성추행사건 있고 상관한테 보고를 했지요. 신고를 했지요. 그때 상관이 현장의 지휘관인 겁니다. 피해자 보호를 해라, 2차 가해를 하지 마라. 이런 지시는 전쟁 때 적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고 했을 때, 그렇지요?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 여중사는 올해 말에 상사로 진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고과점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조용히 덮고 가자. 여중사는 평생 군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여중사를 죽음

에 이르게 한 것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왜? 자기의 삶의 이유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싶은 것인데, 평생 군대에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은데 덕적도에 있는 자기 동료 군인들이 자기의 피해 사실을 다 알아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군인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또 한 명의 중령이 당시 사건 일어났을 때 즉시 보고받지 않은, 그 이후에 8월 달에 이 보고 받은, 신고를 받은 중령이 최근에 입건이 됐지요, 피의자로?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河泰慶 위원** 그리고 그 중령 주관으로 성교육하는 시간 있었지요, 8월 달에?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덕적도에 있는 부대 군인들이 이 성추행 여중사 사건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과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 누구 책임이지요?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항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항명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몰랐던 거예요,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됐는지. 이것 장관 무능 아닙니까? 앞으로 군에서 일어날 일 국방부장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군대, 2021년의 대한민국 군대는 과거 군대하고는 달리 병사들이 다 휴대폰 있어요.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실시간 외부에 알려집니다. 폐쇄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 행정도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굉장히 현대적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방부는 군이 아니라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현대 행정시스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장관의 지시가 먹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
마 청와대는 부담스럽겠지요, 임기 말에 장관을
바꾸는 것이. 또 새롭게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서욱 장관이 옛날 사
람이다. 현대적인 군 행정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년 정부가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
은 몇 달이지만 그 몇 달 동안에 그 어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왜 장관은 그렇게 몇 달 동안 2차 가해 하지
말자, 피해자 보호조치 하자 그렇게 캠페인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
하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군은 국방부장관이 말단 조
직까지 지휘를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
휘체계라는 것 가지고 지휘를 합니다. 국방부장
관이 그러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대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
니다.

○**河泰慶 위원** 이 사건뿐이 아니에요. 2019년에
공군 여대위 성추행사건 덮으려고 했고 지금 채
수사 들어가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저는 아무튼 국방부장관이 국방
부, 현대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
당 위원님들께서도 국방부장관 교체와 특단의 대
책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노고가 크십니다.

강은호 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SLBM이 수중 수조에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
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공개적으로 답변드리
기 조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국민 세금으로 전략무기를 전력
화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지금 핵잠수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핵
잠수함이 기본설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연구는 마쳤더라는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
것도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안규백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
기에 우리가 북한보다 GDP나 모든 것이 수십 배
에서 백 배 이상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전략무기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 하는 이유가 정부
행정관료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
다.

장관님, 본 위원이 반복·되풀이되는 성 비극
과 관련하여 이게 은폐, 무마, 조작, 판박이처럼
되풀이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군에 각 체대
별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기무사, 예전
에 헌병인 군사경찰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 시
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게 작동이 됐으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것인데,
각군에 체대별로 이런 부분들이 문화와 법을 초
월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물론 기무도
5300명에서 25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
까?

○**국방부장관 서욱** 안보지원사령부하고 같이 노
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축
소되고 또 임무의 범위가 조금 조정되고 하는 그
런 과정 중에 과거하고는 좀 달리 그렇게 운영되
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
는데 각 체대별로 이런 것들이, 각 군검찰의 정
보, 기무, 헌병 이런 것들이 체대별로 상호 견제
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
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물론 미군도 1년에 6000여 건의 성범죄사건이
일어나고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성범죄
가 자행되고 있는데 미군도 지금 별도의 기구
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반복되는 성범죄
에 대해서 저는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
래서 우리 군도 문화와 인식부터 사법제도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미군도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
큼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

금번에 민관군 합동에 의해서, 미 국방부의 IRC—이게 특별심의기구지요?—처럼 전권을 부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피해자 면담 또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해서 정책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군사법원 개혁안처럼 지역 관할을 갖는 장관 직속의 군검찰을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각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에 피해 신고 및 보호,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을 법률 구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총괄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땀질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추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장관께서 군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 국방부의 IRC처럼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아까 말씀 주셨던 다른 SAPRO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며칠 전에 또 육군훈련소에서 집단감염 확진이 13명이나 나왔는데요. 전 장병들의 비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신규 입영되는 장병에 대해서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이후에 입소한 훈련병들에 대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공군은 13.9%, 육군은 3.4%, 해병대는 0.6%에 불과한데 어찌된 일인가 해군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군의 잔여백신을 확보를 해서 훈련소에 100% 다, 장병들한테 접종률을 100% 완료시키는 이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군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해군한테 칭찬을 보냅니다.

왜 다른 군에 비해서 해군의 백신 접종률이 100%라고 장관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고받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해군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고 있고, 공군도 접목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

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해병대도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래서 접목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육군은 최초로 시행할 때는 비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8월경에 한 40% 정도 수준에서 접종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그 비율이 조금씩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해군총장의 머리에서 나왔나 참모의 머리에서 나왔나 모르지만 아주 해군이 기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녀를 보낸 부모 입장에서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하나씩하나씩 짚어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이제는 질타가 아닌 지혜와 힘을 모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장관을 비롯한 전 지휘부가 총력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설훈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중식 후에 오후에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 총장님, 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군에, 지난번 제가 해군을 확인하다 보니까 여군·남군 간부들의 비율을 목표가 지금 8.8%라는데 해군은 10%가 넘었더라고요, 여군이.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2차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 이전에 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지금 간과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대의 구성원들 간에 특정 부서에는 집중적으로 여군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 기관에 여군들이 별로 없겠지요, 그런 분야는. 그러나 레이더 파트는 또 많이 있을 거고. 또 공군 같은 경우도 정비 분야 중에서도 엔진 정비 같은 데는 적을 수 있고 여기도 또 레이더 파트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래서 실제로 남녀의 어떤 균형적인 면에서 일부 분야가 인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군 같은 경우도 전투군무 지원 분야에는 여군들이

많이 배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됐을 때 사무실의 좌석을 어떻게 놔라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국방부 지침이 없습니다.

자, 회식을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앉ा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남녀가 둘만 방에 있을 경우는 사무실이든 어디든 문을 개방해야 된다, 이것도 실제로 미군들은 있지만 우리 한국군은 없어요, 그런 지침이. 복장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실제로 여군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지금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한 예를 들면 여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든가 할 때도 여군들을 좌우측 옆에는 앉히지 않았습디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앉혔어도.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하나의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각 부대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위원님께서 열거해 주셨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지침화시킬 것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의견수렴하고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취합하면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북한의 통신선이 개통돼서 며칠간 유지됐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7월 27일 날 해서 한 8월 16일 정도니까요, 15일.

○한기호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은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통신선을 개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을 것을 바라고 했거나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개통하면서 한 첫 번째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손녀딸이 얘기하는 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반응을 보였고 국방부도 여기에 실제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 우리 증원요원 몇 명이나 증원했어? 실제로 연합사가 증편돼서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연합사 근무해서 잘 알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증원요원들마저도, 그러니까 전투참모단 요원마저도 훈련하는 데 영향이 있을까 절치부심을 했는데 질병청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는 협의 끝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전투참모단 요원들 정도는 될 걸로 판단했고요. 지휘소마다, 제대마다 다르지만 증원요원까지 다 포함하기는 너무 밀집도가 높아서 그것을 부대마다 좀 줄였습니다.

○한기호 위원 좀 줄인 게 아니고 실제로 작전사령부에는 증원요원은 하나도 배치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 서욱 못 한 데도 있고요.

○한기호 위원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밀집도가 전투참모단 요원까지도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전투참모단 요원은 전원 참석하고 증원요원에 대한 훈련 기회는 별도로 부여하든가 다른 방식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한기호 위원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갈하고 실제로 겁박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에서 북핵 대응 공동보고서를 만드는데 북한이 오는 2027년도에는 핵무기를 최대 242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장착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보고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갈치고 겁박하는데 우리가 겁먹고 앉아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연합연습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당연한 건데, 그러면 지금 KIDA 원장을 국방개혁실장 하던 분이 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분이 가서 한 것이 KIDA에서 실제로 남북관계 악화된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방현안연구보고서에 명시하던 사업을 일부 중단시켜 버렸어요. 국방현안보고서에는 정부 및 군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연중 수시

로 발생하는 국방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핵화·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해서 안보환경 평가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만들다가 이것을 금년도에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는가? 이 지수가 계속 양호해질 때는 발행하다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실제로 북한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협박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발행 중지를 해 버렸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내용을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 보고받으시고 과거에 이 서류도 받아 보셨겠지요, 과장급 이상 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북한 위협에 대한 것을 분석 보고하다가 북한의 위협이 점점 가중되니까 보고서를 아예 만들지 않아 버리는 이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래서 안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이따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입맛대로 보고서도 만들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드는 이런 국방부,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게 몇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이 괴멸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탈레반이 다 장악했습니다.

이 사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결국은 전쟁이든 어떤 상황이든 군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군이 전투의지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많은 물자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군이 제대로 된 자세로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 겁니다.

간단해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무기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다루는 군인들, 우리 병사들, 장교들 이 사람들이 군을 운용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뭐가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오도록 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군을 아끼고 사랑한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솟아나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작은 예로, 내가 수차 얘기했습니다. 장병들이 먹는 급식 고등학생 급식보다 못합니다. 매일 먹는 겁니다. 365일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안 하는데 그 밥 먹으면서 군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실입니까? 그것을 개선하라고 해도 그냥 우물쭈물이에요. 기껏해야 몇 푼 올리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나중에 상황이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심대한 의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 그냥 보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군인들은 알 것 아니에요. 장병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의무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 안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 예산을 짤 때 좋은 전투기, 좋은 함정, 좋은 탱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그것을 운용하는 군인들, 이 군인들이 제대로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본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야 그분들이—군인도 사람입니다—정말 나라가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아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대한 내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 지금 아프간 사태에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 많은 100조 이상 들어가는 물자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개혁하려면 군인들에 대한, 군을 운용하고 있는 사병들, 위관급 영관급 장군들 처우를 제대로 해 줘야 돼요. 훨씬 낮게 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무기를 갖다 들이자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좋은 무기면 무조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예요. 군인이 먼저예요. 나라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장치 뭐겠습니까? 군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 배정을 달리해야 돼요. 정말 군인을 아끼고 있구나, 나라가. 나라가 나를 아끼고 있구나, 하나하나에서 내가 보면서 느낀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국방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또는 예비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전투기고 함정이고 탱크고 만듭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전투기 좋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것 운용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저는 정말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고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군도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구조상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수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여군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신고센터를 각 부대 내에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사단 내의 성폭력신고센터에 바로 직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서 사단장과 직접 상황을 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직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 내에 그런 장치가 없이는 이것 근절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상사가 제대로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대로 몰랐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교육이 안 되면 계속 일어나요, 이런 상황이.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그리고 제도적으로 성폭력신고센터를 사단 내에 바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면 사단장이 결정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 없이는 이 해결 안 됩니다.

첫째 교육 그다음에 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리고 장치, 장치는 성폭력신고센터를 사단 내에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직보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면 조금 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전투요원들이 갖는 전투의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용하는 무기체계가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정부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대우받고 있다는 또 존중받고 있다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런 게 두 개가 다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성폭력 사건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전수조사 문제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 문제 그다음에 신고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문제, 2차 가해 예방 문제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는데 저희 의견도 있고 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들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서 정착을 빨리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국방위원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저는 성일종 간사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국방부에 너무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한 1년 못 되셨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기동민 위원 언론에 보니까 일곱 번 사과하셨는데 제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제가 국방위로 옮긴 지가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하고 장관님하고 같이한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동안에 벌써 여섯 번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일종 간사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관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참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욱 국방부장관 개인을 경질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해 보겠는데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에서 최강 군대 소리를 들은 지도 꽤 된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들을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군사 문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비본질적인 문제가 국방부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저 역시 군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했었고 이런 부분도 고민 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이 더욱 건강해지고 군이 전투력을 바탕으로 부터 더욱 키워 나가는 계기로 삼으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부족한 점을 더더욱 노력해서 보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기동민 위원 오늘 상임위가 있다고 하니까 공군 이 중사의 유족들께서 새벽까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편지를 들어 보이며)

그분들이 보내 준 편지 겸 질의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장관께 여쭙어봐 달라, 그리고 꼭 답변을 받아 달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한 2차 가해자들의 초동수사 부분들 역시 특임검사에게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 중사가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환경 이런 부분을 국방부와 국회가 노력해서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피맺힌 절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장관님,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숙독해 보시고.

저는 유족들의 요구를 다 받아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택하되 또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의 이유와 논리들이 있을 테니까 다만 그런 부분들을 유족들에게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는 것은 국방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건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군총장님, 지난 6월 9일 날 전체회의에서 제가 ‘이 중사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대단히 비일비재할 거다,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회유하고 지체되고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을 거다’ 그랬더니 남영신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시고 공군 차장 역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해군총장께 여쭙봤을 때 단호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 시간에 바로 또 다른 불행한 일들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지난번 위원님 말씀 이후에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계속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냐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인식과 문화를 바꾸어 내는 것 역시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외국의 군대 같은 경우에도 근절될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미국 같은 경우도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 과정 속에서 많이 나왔지만 SAPRO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최첨단,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식개혁 활동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빈도수는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5월이예요, SAPRO에서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군 내 성폭력 연례보고서를 보면 현역 군인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건수가 6290건이예요. 성희롱은 포함도 되지 않은 겁니다. 복무 인원 1000명 중에 5.1명이 공식 확인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겁니다. 2010년에는 2532건이었어요.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폭한 거지요.

성폭력예방대응국(SAPRO)은 실제 성폭력 피해 인원이 2018회계연도 기준 2만 500명에 이르고 이 중 여성이 1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 2월 18일 날 발표된 연구에서 보면 현역 및 퇴역 여군의 4명 중 1명, 23.6%가 복무 중 성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절반 이상 52.5%가 성희롱 피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내고 끊임없이 병사들을 교육시키고 장병들을 교육시키지만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와 유사한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전부 다 은폐하거나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낱알이 보고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다.

그래서 왜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대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군사 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국민적인 질타를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본과 기초를 닦아 나가는 과정의 출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마음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의

식을 바꿔 나가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법률적인 정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2차 질의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장관님, 김진표 위원님께서 법안을 내신 게 있으세요, 비순정군사범죄에 대해서. 약 87% 정도가 비순정군사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를 민간재판소에 이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여러 가지로 검토를 법무부하고 또 군 수뇌부들 또는 군의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고 있는데 방안 중에 정부 입법안이 우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또 최근 상황을 담은 안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안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들리는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과의 토론 과정 속에서 장관께서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런 자리에서의 의견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제 개인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군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 저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차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요일 오후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가 제도적 보완과 법률적 보완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서 한 6년 정도가 지체된 거거든요. 미국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도적 보완과 법률적 보완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 간에 상호충돌도 일어난 거고 정파적 견해의 충돌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법안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50만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군사법원법의 개정, 현실에 맞는 현실과의 조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민생개혁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개혁 입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아주 전향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야 겨우 반보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서욱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저희는 많습니다. 저희는 군생활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상황을 잘 알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고려 요소들을 위원님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내친김에 조금 견해가 달라도 더 질러 보는데요. 그 고려해야 할 요소, 군인들만이 알고 있는 특수하고 아주 특별한 상황을 우선적인 요소로 넣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제발, 꼭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우선적 요소로 배치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 상식에 머물러져 왔던 영역들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2차 때 다시 토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장관님, 제가 아프가니스탄 망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하면서 제가 일주일 전쯤에 카불이 점령당할 것은 약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 만에 그냥 망하더구먼요.

가만히 보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년간 1000조 원 정도의 국방비가 쓰여졌다 이겁니다. 전쟁비용이 쓰여졌는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20년 치가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기 시작을

하니까 순식간에 망하더라.

그런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그대로 헬기 타고 도망치면서 돈을 갖고 도망치는데 과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도대체 그 나라 군에 대한 통수권은 갖고 있었는가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실탄 떨어질 때까지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전세가 불리해진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 불리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무기와 좋은 탄약 그리고 경제력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나간다 하니까 비정규군한테 곧바로 무너졌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주체세력이 나감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있었던 대통령, 국군……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휘할 수 없는, 지휘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공황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관찰하신 바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늘 바라다보는 것은 상대국의 중심, 그 중심의 마비, 그 마비를 통한 와해 이런 것이 정확하게 통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도 그런 게 명확하게 통했다. 그러니까 중심은 전쟁지도체계인 것이지요. 전쟁지도체계가 와해가 되고 마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3개월 예상했던 카불이 3일 만에 함락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하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 부분 역시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전문분석도 조금 해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20년간 미군이 아프간에 들어가서 군대를 재건했고 그 군대를 저는

병렬형으로 재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이 주체가 된 군을 형성했고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지휘체계가 무너진 군인이, 군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문제를 30만 명인 줄 알았더니 5만 명밖에 안 됐더라는 식의 타박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훌륭한 무기가 있고 병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나도 못 하고 무너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경계통인 지휘계통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을 형성할 때, 우리 연합의 형태가 과거에는 병렬의 형태였습니다. 한국군의 형태와 미군의 형태가 있고 그것을 연합 혹은 동맹으로 묶어서 전쟁을 치르는 조직이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는 미래연합사령부라는 형태로 가고, 즉 합군의 형태, 한국군과 미군이 합쳐진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수행하는 장군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의 전작권 환수가 아닌 전환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의 바구니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게 된다면 이것은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한다 하더라도 병렬형태의 군을 구축하고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20년간 미군이 아프간에 가서 군을 만들었을 때 그 군을 별도의 아프간군과 별도의 통수권을 별도로 놓고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과 협력하는 연합형태를 갖췄으면 만약에 미군이 지금 철수한다 하더라도 사흘 만에 카불이 함락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최초에 구상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병렬형으로 한 합참과 US KORCOM 형태를 생각했었고 옆의 동맹협조본부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다가, 중간에 합참 합동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측과 같이 컴바인(combine)된 조직을 만

들려고 그랬다가 지금 연구하고 의사결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연합사와 같은 형태의 연합조직으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미래의 모습인데 이 구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시행했던 구조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고, 저희 현재 컴바인드(combined)된 CFC의 조직은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이런 동맹조직을 갖고 있는 건데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 조직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조직이다, 연합의 조직이다 하고 평가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다, 환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연합사 조직의 형태로 지휘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것으로 우선 가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의미의 전작권 전환 또는 환수의 목표는 병렬형으로 가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민기 위원 장관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미국군이 들어가서 20년간 어떤 형태의 군을 만들었는지, 군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장관님도 모르실 겁니다. 전혀 모르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민기 위원 그러면 미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군이 별도로 주둔하고 미군만의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하고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했을 겁니다.

○김민기 위원 그것은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것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만 전쟁에서 급격하게 몰락하는 것은 지휘구조가 깨졌을 때입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 사기가 떨어져도 사흘은 더 버티지요, 그 좋은 것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니 대통령이 과연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저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갔다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이런 것을, 그러면 미군이 주둔했을 때 미군이 어떤 형태로 주둔했었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의 형태도 어떤 것이 가장 완벽하고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것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할 게 아니다, 주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보완·고려, 물론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답변들이 굉장히 궁색하게 보이겠지만, 장관으로서의 답변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인지는 하겠지만 이런 사안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진척시켜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그런 사고를 좀 가져 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해군 발표에 따르면 8월 7일 날 피해자가 소속 부대 상관 면담을 하고 성추행 사실을 전달했고 9일 날 사건을 정식 보고를 요청해서 신고 접수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사실입니다.

○강대식 위원 하지만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해군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경 2함대 소속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 상담했을 때 벌써 이 강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제가 정보를 수집했는데 아직까지도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월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위원님. 대신에 6월 30일 규정에 의해서 유선으로 상담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제가 정보 수집을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해군 측에서 은폐를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순간에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해군이 8월 13일 오전 공식발표 하기 전에 확인한 내용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장소, 기지장 계급, 중앙수사대 인수인계 및 유서 미발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발표하고 제가 문의한 것하고 일치를 하는데, 다만 네 번째에 보면 피해자의 강제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인지를 했고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지금 해군 공식발표하고 제가 문의한 거하고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총장님께서도 아직도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8월 12일 해군본부 중앙수사대가 2함대 군사경찰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도 합동으로 수사를 해 오고 있지요, 그 당시부터?

○국방부장관 서욱 사망 사고 이후에……

○강대식 위원 예.

○국방부장관 서욱 예, 국방부조사본부도 전문팀들이 같이 가서……

○강대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제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인지했고 수사에 착수했는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위원님. 아침에도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 드렸듯이 이런 말씀 주신 것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에 포함시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정보가 부족하면 제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글썄, 그렇게……

○강대식 위원 됐습니다.

최근 여러 군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나같이 근본적으로는 1차 피해를 막아야 하고 두 번째는 2차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해군 여중사도 여실히 2차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공군 간부 역시도 2차 가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육군에서도 최근 한 장성이 2차 가해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2차 가해가, 저는 병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에 자체신고기간 동안에 신고를 많이 받아서 적의조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아직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각군에서는 연말연시에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강대식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각군의 2019년도, 2020년도 연말연시 특별강조기간 운영 결과를 한번 봐요. 육군, 공감대 형성. 해군, 경각심 고취. 공군, 공감대 형성 붐 조성. 2020년도…… 이게 교육입니까? 육해공군 다 2년 연속으로 공감대 형성, 경각심 고취…… 그 결과를 국방부에 그대로 보고를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군 내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저거는 제목이겠지요. 저 안에 내용을 담고……

○강대식 위원 보고내용이잖아요, 2019년도 · 2020년도.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어떻게 제목만 보고를 한 건 아니고요. 저 안에 세부아이템들을 가지고……

○강대식 위원 물론 세부내용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나 2020년도나 틀리는 게 뭐 있습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으면 변화도 좀 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앞으로 큰 효과가, 성과가 없으리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그래서 여기가 금년 초까지 한 것이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

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국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육군에서는 창군 이래 첫 여성 육군장관도 임명이 됐고 육군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인 수사관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은 거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개혁을 넘어 가지고 지금 혁명 정도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암울하기만 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께서도 특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출범시킨 것이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시켰는데 이 위원들이 이 조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등 이런 이유로 사임을 표했습니다. 군당국의 다짐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군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군 사법체계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장관께서 생각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큰 테두리라도 어떻게 혁명을 하실지 계획과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민간의 관점을 수용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 군이나 예비역들 인원 편성을 대폭 줄이고 민간 전문가들을 거기다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최초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보다 날짜를 연기해서까지 위원회 구성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용들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의 의견은 있지만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한 노력을 했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군이 출석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갑자기 하라고 해서 해군이 출석한 걸로 알고 있고 해군이 출석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애기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저희들한테 크게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희들이 지원이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 11개월 만에 장관께서 일곱 번이나 사과를 하셨는데 다시는 임기 내에 이런 사과 하는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장관님, 최근에 우리 군과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규백 위원님께서 방사청장한테 우리 군 기술력을, 군 전력을 질문을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언을 가장해 가지고 답변을 어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 기분이 좀 많이 나빠도 나쁠 텐데…… 이 질문을 사실은 안 드리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분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일부라도 축소된 것이 연합지휘소 훈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합지휘소 훈련 말고도 우리 대대급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건 연중……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훈련은 육해공이 다 할 텐데 그 훈련도 축소가 됐나요?

○국방부장관 서욱 실병기동훈련은 19년도에 한미 간에 대대급 이하는 연합으로 하고 연대급 이상은 각자 하자 이런 것은 그대로 준수하면서 연중 균형되게 하고 있고, 지휘소 연습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한 가운데 내실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아마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때보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삼사 배 정도 나오고 이번에도 미군에서 확진자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4명인가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4명이 백신을 다 맞은 돌파감염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해 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우리 대규모 지휘부 공백 사태를 초래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느 부처마다 각자의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한미연합훈련 관련해 가지고 일부 부처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국방부에서는 본연의 임무에 맞게 잘 스탠스를 유지하고 원칙을 유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아프가니스탄이랑은 비교되지 않도록, 비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규백 위원님을 존경하기는 하는데 안규백 위원님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워낙 전문가셔서, 우리 위원님이 이런 좋은 법안을 내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보려고 그러합니다.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군인권보호관 이게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2011년에 발의를 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됐더라고요. 내용들은 기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군 특유의 폐쇄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군인권보호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법안들이 보면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미 국방부, 군대를 비롯한 우리 행정부의 진정을 받아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권위의 권고처분이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기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사권과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이 만약에 부여가 된다면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실질적으로 형해화가 되고 인권위가 실질적인 군의 상위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의 행정이 통제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군 통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둔다면, 우리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면……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 입장에서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는 대로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는 그러한 인권보호관 제도가 저희 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어떤 기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식 위원 이번의 군 내 성추행 관련된 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질문은 많이 나왔으니까.

군 내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살을 하는데 대충 병영 부조리, 그러니까 가혹행위들이다, 성추행이나 그런 범죄에 의한 피해가 한 몇 % 정도 될까요?

이거 우리 복지실장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유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김병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게, 사실 성추행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군에서, 그러니까 성추행 이외에도 가혹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피해를 받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칫 이 사건만 너무 공론화되고 이 사건만 커다랗게, 이 사건만 이렇게 부추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사건이 이 사건에 묻히지 않도록 다른 사건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이런 처분에도 똑같은 관심을 가져 달라.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그런 것은 그 사건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든지 굉장히 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군 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당시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일들은 혹시 없을까 또 내가 균형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성일종 위원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하고 언제 통화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서욱 날짜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습 한 1~2주 전에 통화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전에는 언제 통화하셨어요, 한미 훈련 이전에?

○국방부장관 서욱 그러니까 그 이전에, 1~2주 전에 통화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왜 통화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7월 달에 방미를 하기로 했었는데 본인이 이런저런 동남아 순방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고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미 훈련하기 전에 통화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한미 훈련 연기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그런 일 없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전에 통화한 것에도 없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 전에는 통화 안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한미 장관끼리 통화를 하면서 훈련에 대한 축소나 연기 이야기는 전연 없었던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훈련 얘기를 했는데 훈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훈련이 방역 수칙을 좀 지켜 가면서 안전한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연기나 축소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없었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오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국방부장관께서 이 훈련에 대한 연기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닌 거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닙니다.

○**성일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오셔서 가지고 여러 번 사과를 하셨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관님이 많은 지시를 내리셨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성일종 위원** 그런데 왜 그 영이 안 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국방부……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일종 위원** 아니, 군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영이 제대로 먹힐 때에 그 군에 군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전투력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군 여중사 사건이 있는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장관의 영이 이렇게 안 선다고 한다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장군에서부터 지휘관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서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의 영이 안 선다고 그러면 장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관이 계신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장관의 영이 안 서 가지고 일곱 번씩의 사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도 안 돼서. 나는 이 사건이 날 때마다…… 장관께서 이것을 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관을 중심으로 있는 지휘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영이 안 서는 것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성일종 위원** 아니, 아프가니스탄이 왜 저렇게 됐는가, 영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저희가 아프가니스탄하고는 다르지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의 영이 안 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난 지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

○**성일종 위원** 모르실 수 있습니다. 5월 22일.

그러면 덕적도에서 난 해군 여중사 사건이 난 지가 언제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5월 27일입니다.

○**성일종 위원** 5월 27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주임 상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아까 신원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법률과 영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쳐요. 30일부터 엄청나게 여론이 들끓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 덮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리고 8월 7일 날 가서 기지장한테 얘기를 했고 8월 9일 날 조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8월 9일 날 전투를 보내고 교육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또 밝혔다는 것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장관님 지시하신 날이, 여중사 사건이 나고 장관께서 처음으로 지시하셨던 날이 언제예요? 지휘를 알린 날이 언제예요?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나고 나서, 사망 사건 나고 나서 장관께서 ‘야, 이것 조심해라. 교육하고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 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 직후에 여러 차례, 수차례 또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하는데, 제가 지휘체계 속에서 지휘를 하니깐 각군 총장들 또 합참을 통해서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도대체, 이 지휘가 여러 번 내려갔었을 텐데…… 그러면 22일 날 해미 공군비행단에서 사망 사고가 났고 27일 날 이 사건이 났는데 그 이후의 절차를 보면 엉망인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타살입니다. 왜 그러냐? 공군 여중사 사건도 사건을 인지했는데 덮으려고 그랬고 경찰 헌병대가 덮으려고 그랬고 부실 수사한 것 검찰로 그냥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덮으려고 그랬고 기무사령부가 11일 날인가 확인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젊은 여성, 이 귀중한 자원이 세상을 뜬 거예요. 전에 나오셨을 때 장관께서도 이것 국가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어요.

이번에 덕적도에서 있었던 사건도 5월 27일 날

사고가 났는데 상사도 다 무시를 했고. 아니, 전방의 병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록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에 주임 상사도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8월 7일 날 인제에 있었던 기지장조차도 이 규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국가가, 지금 군이 정상적인 시스템만 작동이 됐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니 장관께서 아무리 지시를 내리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이 군의 군율에 대해서, 영 체계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국민들한테?

○국방부장관 서욱 영을 앞으로 더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장관뿐만 아니라 삼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지금 안 서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사고가 나 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고가 뒤에 났는데, 5일 만에 사고 난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 타살인데, 해미 공군들의 사건은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지만 이번에 해군에서 난 것은 은폐, 은폐하고 문제가 있어도 지휘관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 했지만 이 사망 사건이 나고 났었을 때의 사후 조치만 빨랐을 뿐 전연 진전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민홍철 정리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영이 안 서는 것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국방부장관 서욱 영을 잘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 안 먹힐 겁니다, 이제. 그것도 안 먹힐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거고 본인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문제는 없지만 연대의 총사령관 책임을 지는 제일 헤드로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군이 상당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령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군정 분야가 지금 행정적인 측면이나 시스템, 제도 이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아주 비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아까 군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생각해서 최적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법사위원회 관련 법안이 몇 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위원장 민홍철 아까 장관께서 정부안을 위주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만 밖으로 민간 이양을 할 거냐, 아니면 비순정군사범 몽땅 민간 이양을 할 거냐, 아니면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할 거냐,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한 소신과 지금까지 우리 군이 처한 또 군이 유지해 왔던 측면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줘야 그게 개혁이라고 할 것인데요.

아까 장관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생각해서 최적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아까 얘기드렸던 안들입니다. 그 안들인데, 위원님들이 내셨던 안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 안과 저희들 내부에서 토론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조금 의견을 들어야 될 기관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군 내부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 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도 이것을 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안을 하나 내 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계속 그렇게, 정말 참…… 아까 우리 군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군사법제도 개선도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 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순정군사범의 사건이 군사법 시스템 때문에 은폐되고 은폐되고 그렇게 생각을

안 됩니다. 민간으로 이양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재판은 한다 해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군 지휘권하고의 충돌이 올 부작용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의 지휘권은 같은 사안을 놓고 징계권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돌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부대 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사법 절차도 허용을 해야 될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지휘관들도 참고인 조사나 증인신문에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군이 대처를 할 거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유지될 거냐, 아마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군의 사기와 또 군의 군기와 또 군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그런 조직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것은 밖에서 해야 된다? 밖에서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우리 군의 존재 의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아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참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 조류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저는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순정군사범죄를 밖으로 내고 순정군사범만 예를 들어서 군에 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려 요소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안을 내놓은 것은 2심은 밖으로 내더라도 1심은 군에 두자 그런 안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참작해서 군의 현명한 의견을 집약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군 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장님 말씀하고 제가 고려 요소를 잘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하고……

○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애기도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관련 위원회예요. 군사법원이 법사위원회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방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지금 법무관리관실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때 국방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아까 기동민간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최적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주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신청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우리 군을 비교를 해서 우리 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국민들도 사실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9·11 테러를 이끌었던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프간을 침공했고 그 당시에는 한 달만에 주전쟁은 끝났었지요. 그렇지만 민주정부를 세우면서 또 지루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7000고지에서 5000, 4000 이런 아주 험준한 고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에 맞는 지형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기에는 강대국이 들어가서도 늘 고전을 했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도 고전을 했었고 또 영국도 1800년대 들어가서 3차 전쟁을 거쳤을 때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고 소련이 또 1979년도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하다 물러났던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 해야 될 것은 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전투 의지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또 군은 늘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형에 맞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한국 지형에서 첨단무기는 별로 안 맞다라든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을 비교하는 단순비교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도 6·25전쟁 때부터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과 사실은 알카에다를 제거하고 전쟁 목적을 이룬 후에 미국은 한 10년 전부터 거기에서 계속 철수를 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이지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군은 그것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우리도 저런 일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교육에서부터 훈련도 강화하고 또 국민들에게 안보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저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아까 시사점은 받아들이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저희 상황에 대입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잘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줄 것은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18일 날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 중에 11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하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2명이 또 늘어나서 13명 확진됐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동일 건물 내 950명 전체를 다 PCR 검사를 해 가지고 치료센터하고 병원에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오도록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백신을 맞고 오는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병무청장님, 몇 프로가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입영합니까?

○병무청장 정석환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백신 비율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확인……

○김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독려를 해서 군에 오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입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앞으로 장기화되고 일상화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육군훈련소 입영 대상자 중에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0% 정도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군 내 접종 비율은 대략 94%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은 군 내 집단방역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희망과 함께 돌파감염 우려를 동시에 같이 대비를 하면서 방향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일부 여러 위원님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물으면서…… 국민이 이해할 것 같아서, 통수권하고 전시작전지휘권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대통령께서 갖고 계십니다.

○신원식 위원 미국 군대는 미국 대통령이 가지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자국군의 통수권 아래 양국이 같이 싸우니까 연합방위체제를 하고 있고 그 연합방위체제는 평시에는 역시 각 나라가 각 나라 군대를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단지 전시, 특히 대프론2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보면 전방 작전, 해군 작전, 공중 작전 같은 이런 분야는 연합사령관이 수행을 하고 후방지역 작전 이런 것들은 우리 합참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리고 이런 작전들을 제외한 인사·군수, 소위 말해서 전투군무지원, 작전 지원에 해당되는 분야, 동원 예산 이런 것은 각 나라가 각 나라 책임제로 하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통수권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오해를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왔을 때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부대 35진 5명이 백신 접종 안 하고 갔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신원식 위원 8월 15일부로 본국으로 철수를 했지요, 우리나라로 다시?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저희들이 다각도로 접종을 현지에서 시켜 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복귀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특수요원들 다 떼고 나면 승조원들 5명 근무를 돌리는 데 약간 로드가 걸릴 텐데 추가 파병은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파병하지 않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신원식 위원 파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해군총장님, 어때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지금 와 있는 부사관 1명, 병사 4명인데 취사병입니다. 현지 부대장이 현지의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 파병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최초에 안 보냈어야지, 4명이라는 것도 해군이 3직제로 돌면……

다시 해군총장께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 로드가 더 생긴다는 것도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은 해외파병 희망자들 많을 텐데 얼마든지 파병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언론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할 텐데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언론에 공개를 좀 해 주시고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향모 사타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신원식 위원 제가 KIDA 중간보고를 받고요 좀 솔직히 황당하고 ‘야, 정말 이게 무슨 사타냐’ 싶더라고요.

우선 경향모 사업 필요성 부분에 제가 작년부터 무수히 이야기하고 그 필요성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필요성 유무라는 공청회를 했는데 KIDA에는 보니까 기존 국방부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서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 이렇게 중간판단 해 놔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문서 그대로 할 바에야 필요성 유무를 KIDA에서 왜 하는지…… 그래서 KIDA에서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 연구원이 저한테 직접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방사청장 보고 받으세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1년 내내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것들은 ‘여기에서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겁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

○신원식 위원 저한테 보고 시키고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폭증했어요. 방추위 할 때 함정 하나가 예산 얼마라 했어? 2조 300억 했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신원식 위원 KIDA에서 연구했는데 2조 6000억이 넘었던데, 갑자기 6000억이 감축되기로 플러스 됐어요.

이 말은 뭐냐하면 KIDA도 내가 이리저리 따지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게 했던데, 한 칠팔천억 이상 될 거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일부 전문가들 들어 보니까 3조 같지 4조 같지 모르겠는데 해군이 속 2조로 해 가지고 국민 속인 거예요, 방추위에서.

아니, 함정 하는 게 값이 대개 비슷하게 나오지 어떻게 6000억이 올라가요, 거의 40%가?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노임 단가 기준을 어떤 걸로 선정하느냐에 따른 견해 차이로 생긴 부분도 좀 많이 차지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또 확인해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서면 제출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사타 대상을 함정만 딱 했어요. 아니, 구축함이라든지 호위함은 함정 단일로 돼요. 그런데 경항모는, 경항모 혼자 배가 뚱뚱 떠다니고 사업이 됩니까? 거기에 함재기 실어야지요, 헬기 실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지 그 예산 포함 안 됐어요. 적어도 3조 이상은, F-35B하고 헬기가 필요한데 이걸 뺐어요.

그다음에 해군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듯이 경항모 전단을 구성을 하면 여기에 탑재 항공기 그다음에 항모에 특화된 어떤 방공체계, 호위 전력들—잠수함, 호위함, 방공구축함—한 10척이 따라다니는데, 항모가 혼자 비행기도 안 싣고 2조 6000억짜리 배 하나가 뚱뚱 떠다니는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조사 대상 항모는 항모 전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함정하고 틀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왜 사타 소요예산을 단일 함정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요 수정 근거도, 방사청장님 ‘JMS’ 한번 보세요.

‘사단급 상륙작전 수행 능력’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갑자기 중기소요 전환 제기한다면서 ‘JMS’ 없는 말을 딱 집어넣어 났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억지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준을 제가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정말 웃깁니다. ‘함정 자체를 만드는 플랫폼이 기술 수준 충분하다고 판단’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충분하다고 판단했냐 하니까 그동안 함정 건조를 많이 했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보통 함정하고 항공모함하고, 구축함 짓고 경비함 짓는 그 능력으로 항공모함이 바로 되냐? 물론 사출하는 F-35C를 가지게 되면 더 복잡하지만, F-35B는 수직 이착륙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열 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딱선 만들어 본 경험, 어선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컨테이너선 만들 수 있다, 내가 벌크선 만들 수 있으니까 LNG선 만

들 수 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못 해, KIDA에서요.

그다음에 전투 체계도 잘 알지만 TRL2잖아요. 이게 업체는 6 되고 정부 주도는 4가 돼야 돼요. 그것보다 기술력이 훨씬 낮아요. 이랬는데 무슨 재주로 전투 최고 기술 수준을 충족하냐니까 ‘외국 업체 기술 확인이나 협력 구매 하면 됩니다’……언제, 어떻게 그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방공 관제는 한국의 TRL이 워낙 방공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기술 수준이 현재로서 문제가 없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함정하고 전투 체계는……

마지막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신원식 위원 그냥 장밋빛 미래에 기대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 방사청 한 것, KIDA 소요 검증, 사업 추진 기본 전략, 그냥 그전에 나와 있던 문서를 그대로 해서 나는 KIDA에서 무슨 사타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사청장님! 필요성, 기술 수준, 소요 예산, 한 사람이 나와서 문서 몇 개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각 분야별 했던 책임연구원, 문서를 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고하십시오. 저를 설득을 시키세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하고 방사청장님 말씀 들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하고 비슷하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 절차도 무시하고요, 내용도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나는 KIDA 사타를 중간보고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기초적인 조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것으로 무조건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최소한 기본 양심도 없느냐, 당신들은’.

방사청장님, 중간보고 다시 받으시고 그분들 전부 다 저한테 보내세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 좀 더 점검하겠고요.

사타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전단 그다음에 함재기까지 다 보는 것도 방법일 테지만 일단 저희가 국회의 예산 검토를 위해서 하는 대상으로, 경항모로 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간 부분이 있고.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준비성 관련해서는 좀 더 점검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경항모나 어떤 주요 대형 사업을 가게 되면 사전에 핵심 기술이라는 형태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경항모의 경우에도 20년부터 24년까지 적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9개 사업은 이미 핵심 기술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 KIDA에서 그 분석하는 분들은 기술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적 측면과 그다음에 항모 자체의 전술적 필요 이런 부분을 깊게 보는 분이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같이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아니, 방사청장님이 한번 살펴보라니까, 중간 사타 보고를.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KIDA에서 뭐하러 사타를 합니까? 제가 보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짚어 보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옛날 문서를 가지고 그냥 베꼈어요. ‘됨, 됨, 됨, 됨’ 했다고.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하여튼 경항모 사타 결과보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식 위원님께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군참모총장님!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예.

○위원장 민홍철 경항모 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해군이 아까 신원식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함대가 구성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으니까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요, 현재 해군이 3개 기동군단으로 개편이 되잖아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 기동군단 중에 하나의 모함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을 건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군총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세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동전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력사업 가고 있는 구성비를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요. 그 3개로 지금 편성을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를 그 3개 기동군단 중에 하나의 모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호위함들이 필요가 없다, 추가로 건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지금 건조하고 있는 함정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경항모만 건조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호위함들을 다시 건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경항모는 현재는 건조하면 되고 더 추가로 사실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을 건조하는 계획에 따라 건조되는 함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외에……

○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 또 참모총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보고받기는 다른 추가 구축함이나 호위함은 할 필요 없고 현재 지금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3개 기동군단에 하나의 모함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추가로……

○해군참모총장 부석중 추가로 건조할 그것은 없고 현재 계획되는 함정들이 건조되고 있으면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경항모 때문에 별도로 건조한 함정은 없다 이거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장님,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이게 토론이 돼 버리면 안 되고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이를테면 경항모에 필요한 호위함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면 이지스 체계나 그 위에 또 커다란 호위함들이 있을 텐데 호위함들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참총장님께서 말씀드리시는 것은 이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만 되면 경항모를 모함으로 해서 기동전단을 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분명히 2조 200억이냐, 2조 6000억이냐, 10조가 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신원식 위원님……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제가 신원식 위원님께서 다양한 측면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점검하고 짚어 볼 것은 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 연구시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아니 해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EEZ에, 원해 나간다고 기동함대를 조성한다는데 그 배, 항공모함 따라 항공전단으로 가면 한반도 해역, 수역에 공백이 생긴다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동풍-21의 사거리, 그다음에 북극성-2형, ASBM을 북한이 지금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거리 1000km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 틀려. 그냥 우리 EEZ 내에서, 우리 띠에서 항공모함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니까. 이게 전단에서 원해 작전 한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해군총장이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하여튼 내가 이것 끝까지 따질 테니까, 해군총장, 그렇게 국민을 속여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국방부장관님, 중심 잡으세요.

○위원장 민홍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고 함대의 전력과 기동전단 전력은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그래서 지금 그게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공백이 생긴다 그러는데 공백이 생기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장님하고 해군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조 계획, 아까 사타 결과와 운용 개념 그것을 국회에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순서에 의해서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청장님, 지금 항모와 관련해서 사타가 진행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한국형 항모 전투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07년부터 항모 도입에 필요한 구축함, 잠수함, 해상 작전 헬기, 군수함 지원 등이 이미 꾸준히 건설이 되어 있고 지금 연부액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항모 전단 구성에 필요한 것은 중기·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운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안규백 위원 그것을 왜 이야기 않습니다, 새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가고 있다고?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아까 저랑 해참총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왕에 만들 거 개미도 오장육부가 있고 하마도 오장육부가 있는데 한국형 항공모함이라 하지 왜 경항모, 중항모라고 얘기합니까? 경항모는 뭐고 중항모는 뭡니까? 그냥 한국형 항모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경항모…… 우리 군의 자존심을 상할 일 있어요? 이왕 가는 거 그냥 한국형 항모함이라면 되는 것이지 뭘 경항모, 중항모 주저리주저리 얘기합니까?

그거는 합참하고 해군본부하고 방위사업청 한번 그 이름을, 명명을 다시 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을 터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지스함 체계는 이미 구축해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질문이 많은데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민홍철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바뀌어서 사업을 다시 합시다.

○안규백 위원 아니, 명명을 하면 되지. 교육사령관이 잘 좀 하시지 그랬어.

오늘 본 위원이 두 건의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법에 관한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 기준 또 이것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그 어중간에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방위력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장치 사업이고 상당히 규모가, 기간이 길 겁니다.

이를테면 KF-21은 11년, KUH는 5년 이렇게 상당히, 이걸 5년이라도 짧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TMMR은 십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착수금이나 중도금의 적기 지급이 사업에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게 미치는 것이지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 방위사업은 쉽게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경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저희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규백 위원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개정을 해서……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다른 사업하고 방위사업은, 생산과 소비와 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세계 방산 6대 강국으로 지향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불필요한 절차가 우리 방위사업 경쟁력에 상당히 저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

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논리의 비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군은 1년에 6000건 넘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기상천외한 엽기적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군이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쨌습니까? 이것을 수평적으로 아프간하고 미군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서욱 ……

○안규백 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부대 내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어떤 생각에서 말을 좀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사실 성 문제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역장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의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대오각성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혈과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갖다가 못 일어서게 다리까지 분질러 놓는다는 것은 저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지휘부도 대오각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 시간 좀 많이 드려요.

○위원장 민홍철 더 드려. 많이 드려.

○안규백 위원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재발되지 않도록…… 성인도 학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20대, 30대 혈기 방장한 60만 대군이 있는 군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학습과 반복이 필요한데 저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각 제대별로 이런 정신교육을 좀 더 심화시키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22사단장이 그런 일이 있었던데 장성들도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구분을 못 하고서, 그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전력, 전투만 해 왔지 몸에 다른 정무적 체화가 안 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장교입니까, 그분이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니까 그분이 직무대행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명예로 그렇게 보직이 해임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재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인간이 망각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이렇게 후속 조치하면서 위원님들 말씀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하는 그런 체계까지 다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제가 국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 12건의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불용되거나 미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전 국방위원들이, 한기호 위원은 조금 신경 썼지만 전 국방위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요, 그때 당시에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먼저 국방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100%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방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 12개 중에서 5~6개, 6~7개 사업의 경우에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황을 보면 시설 사업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론칭을 못 한다든지 또 해외에서 도입하는 사업들의 경우에 생각보다는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입찰에 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하면서 계약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방산 수출이 거의 배 이상으로 수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역동성과 어떤 진취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납기 기일이나 이런 것이 핑크가 없이 상당히 그런 신뢰성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프론티어 정신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내 방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납기 기일 준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 생긴 사안의

경우에는 업체 이유나 이런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설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생겼든지 아니면 해외 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면서……

○**안규백 위원** 민원이 생기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꾸준히 해야지 민원 생겼다고 뒤로 미뤄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말씀의 취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이번 성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사실 군 생활을 한 40년 한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기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인들의 의식이. 이것을 숨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보고만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다 문제 없이 처리가 될 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자들한테 그런 브리핑을 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기무사 그러면 아주 나쁜 것만 자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기무사를 안지사로 바꾸면서 기무사에서 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들이 지휘관에게 부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 않도록 거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사로 바꾸면서 훈령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알고 있어도 보고 안 해요.

또 헌병도 군사경찰로 바뀌었습니다.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사경찰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보고가 차단됐습니다.

부사관단 활동도 과거에는 부사관들 간에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까지 주임원사가 지휘관에게 보고했어요. 이러한 견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 참모가 보고 안 할 수 없었고 지휘관이 보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전부 죽여 버렸습니다. 결국은 지휘관은 무슨 생각을 하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방개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제가 사단장 하고 군단장 하고 사령관을 할 때도 부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은 많은 부분을 기무부대에 의뢰해서 확인했고 또 군사경찰에 물어봤고 주임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능을 죽인 것이 국방개혁입니다.

또 하나, 과거에 ‘장포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장군을 포기한 대령. 국방개혁을 하면서 많은 장군 자리를 민간인으로 바꿨습니다. 민간인으로 바꾸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민간인들과 군인과는 의식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공군 법무실장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얘기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무관리관을 누가 했습니까? 장군이 했습니다. 투스타가 했어요. 그래서 법무장교들이 마지막 이 계급을 가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령과 준장에서 다 끝납니다. 상위 직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무실장을 한다, 육해공군 법무실장 한다, 그게 마지막 보직이에요. 올라갈 자리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편하게 있다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사청장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게 밑의 하위직은 장교들이 있는데 상위직은 장군을 하나도 없이 다 빼느냐, 무슨 희망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느냐……

공무원으로 바꿨으면 결국은 똑같은 1명의 자리에 1명이 들어간 거예요. 신분이 군인이 민간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주는 봉급이 줄어들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산도 절약 안 됐어요. 그 봉급이 그 봉급이에요. 그것 왜 바꿨어요?

군의 사기를 죽이고 일할 의욕을 죽이고 희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여 놓고 군이 지금 기강이 해이됐다고 얘기하는데 군이 기강이 해이된 게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해이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했어요. 이것을 국방개혁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포장지로 씌 거예요. 이 포장지가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이 포장지가 풀리고 있어요.

장관님, 이렇게 해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법무관리관, 뭐하러 자꾸 사건을 가지고 만들고 건드리겠어요.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끝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 어느 부대에서 중사가 자살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은 보고를 점심 때 잠깐 받으셨겠지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는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군인들이 우리들끼리니까 이것은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또 어느 예비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군인들이 세미나를 한다 또 보여 주기식 행사를 한다,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쇼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부대 관리하고 내실을 기하는 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력 증강, 경항공모함, 보여 주기식 전력 증강이에요. 이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저는 기무사에 병폐가 있었던 것은 뻔하다 하더라도 보고하고 사건이 있을 때 진단하고 하는 기능을 줘야 돼요. 왜 안 줍니까? 제가 기무사령관한테 따지니까 기무사령관은 ‘우리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보고를 받아요? 보고받을 데가 없어요. 군사경찰, 반드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있어야 되고 첩보 보고를 지휘관한테 해야 됩니다. 감찰, 주임원사 하는 부서관단, 군사경찰, 기무, 이와 같이 비선라인이 선의를 위해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장관,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공군의 법무실장 문제는 사실은 다 상위 직책, 계급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고등군사법원장 이런 자리들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모습이 우리 간부들이 현재의 SNS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듯한데, 위원님들이 진단하셨듯이 아직 교육이 좀 덜 되고 매뉴얼 적용을 못 시키고 또는 자기가 피해자로부터 보고받았으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을 그냥 우매하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거라든가 이런 과오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국방개혁의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어려움들 속에서 국방개혁이 이루어진 거니까 또

이 상태를 놓고 보다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장관님, 군사법원법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당 내에도 그렇고 국방위 내에도 여러 기류가 있고요, 아마 국방부 내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 온 지 이제 불과 한 7개월밖에 안됐지만 이번 상임위라든지 그동안 토론 과정 속에서, 특히 군대를 경험하고 수십년 동안 군생활을 해 오신 선배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교과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매뉴얼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지금 시기에 맞는 혁신과 개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우리 군이 생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형사사건의 87.3%—2020년 기준입니다—비순정군사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어도 좀 바꿔 주세요. 순정군사범죄, 비순정군사범죄……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적당한 용어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국방부들하고 토론하셔서 좀 더 국민 친화적인 용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정군사범죄 비율이 12.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군사기밀 누설, 정치 관여 등 군사범죄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통치권자의 의지도 강력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답변들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선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들입니다. 이제 한 번쯤은 결정하고 지금 시대의 상식에 맞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여중사 사건이 연이어 터졌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하셨을까? 특히 지금 해군 여중사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2차 가해가 있었길래 그렇게 순식간에 처음의 태도와는 다른 결정을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 성실하게 보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서와 관점 역시 기동민 개인,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동민 개인의 입장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전쟁을 겪은 군인과 유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하던데—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을 남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2차 가해 등의 다른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실제 이런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관찰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될 대단히 큰 사업들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는 놀란 게, 미국 통계인데요, 2019년 덴버 재향군인의료센터, 유타 대학교 및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성폭력을 경험한 300명 이상의 현역 여군과 퇴역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9%가 현재 시점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선택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살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감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좀 더 참고 견뎌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훨씬 더 타당한 선택일 텐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과 의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 대단히 제한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라는 것을 저부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들 입장이 되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접근법이 어찌 보면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리고 국방부가 정말 근본적인 혁신에 돌입하겠습니다만 정말 기본적인 조치사항들도 2차 가해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사항들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병사들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말 제도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불행한 사태들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와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더 하고 또 국방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토의해 보면 정말로 많은 의견들을 내줍니다. 그 의견 중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를 지휘계통이나 이런 것을 잘못 선불리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 역시 조금 잘 살펴보되, 그런데 기본 뼈대가 아마 생길 겁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 보면 기본 뼈대가 생길 것이고 그 뼈대 속에서 또 약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한 30초만 주시면……

○위원장 민홍철 예, 1분 드려요.

○기동민 위원 장관님께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은 사안들이 있어서요. 물론 사고가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의 당혹감과 국민 여론 이런 부분을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당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전환기라고요. 기준선을 이동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까지 내가들을 바에야 군복을 벗고 말지 혹은 직을 때려치우고 말지—장관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그것은 하나의 선택일 수 있고 책임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과정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큰 책임을 느끼신다면 지금 이 시기, 이 전환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고 진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국방부장관의 존재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시간 더 드렸는데 마치시네요.

○기동민 위원 너무 많이 쓰면, 또 성일종 간사님도……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기 위원 장관님, 간단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청해부대원이 전원 귀환을 했었지요, 지난번에?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민기 위원 이게 간단한 거였지요?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갖고 갔으면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었는데 항체검사키트를 갖고 가는 바람에 전혀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기로 오인해서 선 조치를 못 해서 나중에 전원 귀환이라는 불명예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7전단 의무대에서 ‘떠나기 전에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갖고 가라. 그것도 진해에 있는 해양의료원에서 갖고 가라’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이것을 안 갖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까먹고 안 갖고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숫자는 충분치는 않았습시다마는, 출발하기 전에 군장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을 갖고 가라. 와서 찾아서 갖고 가라’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서 진해까지 가려면 택시로 5만 원이나 들어요. 왕복 10만 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간파한 게 아니라 알고도 안 갖고 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상 훈련을 나갈 때는 군장 검사를 반드시 하는데 도대체…… 이것 군장검사를

한 거예요? 장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국방부장관 서욱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기 위원 보고받았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민기 위원 바로 이런 아주 작은 것이 그런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대 단위로 훈련 나갈 때만 하더라도 군장 다 까놓고 군장 검사하고 나갑니다. 그 중차대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검사키트를 갖고 나가라는 데 그것을 안 갖고 갔다? 저는 이것은 귀찮아서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방사청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도 사타 없이 즉 사업타당성조사 없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방사청장님이 바뀌셔서, 그것은 알고는 있을 테지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그런데 같은 크기로 같은 중요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타 없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그렇게 반영됐습니다만 사타가 진행 중에 있고, 국방위에서 위원님께서 논의하는 과정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타 결과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2019년에도 사타 없이 12개의 방위력개선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을 보면 사타 없이 할 정도로 긴급하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데 집행률이 이것 형편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그냥 총액 기준으로만 한다면 집행률은 한 94%의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한 6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평균 났더니 꽤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총액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큰 사업들은 제대로 집행했는데……

○김민기 위원 지금 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해상감시레이더는 3.7%, 장거리 레이더는 6.1%, 개인……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맞습니다.

○김민기 위원 뭐 이렇게 죽 나갑니다. 이것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30mm 차륜형 대공포는 281.5%예요. 그리고 120mm 자주박격포는 136%예요.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115%예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 편성보다 281%나 더 됐을까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한 3~9%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정비 정도나 이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초기단계, 작년 초에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이 집행되면서 일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선금비나 전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집행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이것을 다 합쳐 보니까 꽤 많은 퍼센티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 사업이 사타를 거치지 않은 거였어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러면 281%라는 것은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어디서 전용했느냐, 이것은 천궁 사업에서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833억이나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김민기 위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마무리하세요.

○김민기 위원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타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전술정보통신체계, 즉 12개 사업 중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와 81mm 박격포 이것은 정상입니다. 왜? 99%, 101%니까요. 나머지는 극소하게 적고 아니면 딱 데서 전용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즉 사타라는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면 이런 일들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얘거예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덜 쓴 거와 많이 쓴 것을 합쳐 놓고 평균을 내니 비슷하게 돼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요. 날개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사타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편성한 게 꽤 있다고 하니 그 설명은 예산 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공부 좀 많이 해 오세요, 이것은.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산 편성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 위원 장관님, 퇴역한 친구 장성이나 또 선배 장성들을 가끔 한 번씩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훈련 안 한 군대가 전시에 연합작전이 가능할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의 소리를 종종 하는 것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이 개입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계속 개입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UFG 연습에 우리 병력 참가 규모가 약 5만여 명에서 21년 전반까지 1만 명으로 축소됩니다. 모두 실기동훈련 없이 지휘소훈련입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연합방위태세 유지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체로 전투참모단 중심으로 증원요원을 줄여 최적화시켜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최적화 훈련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하는 것을 장관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말씀 못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사실 저는 저 훈련에 다 참여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훈련이……

○강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최적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저 도표를 혹시 국민들이 오

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7년 UFG 연습이 아마도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UFG 연습이 당시에 정부연습을 같이 했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그것하고 저 상황이 다 다르다, 그래서 UFG 연습은 을지훈련을 빼 가지고 을지태극으로 별도로 빠지고, 그다음에 저건 순수하게 KR하고…… KR이 19-1차 또 UFG의 FG, 을지(Ulchi) 빼고 포커스렌즈(Focus Lens)·가디언(Guardian) 연습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변화가 되어 간 건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 훈련에 비해서 훈련 여건이 매우 안 좋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로서는 질병청하고 협의해서 최상의 노력을 해서 이번 훈련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저 숫자 자체를 그렇게 막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대식 위원 뭐 숫자가 큰 그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강대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오전에 답변하실 때 ‘최적화, 최적화’ 소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장관께서 생각하는 최적화는, 여기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규모가 되어 있는데 과연 한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게 최적화일까 그것을 제가 아까 전에 물었던 겁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전시 편성을 고려해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최적화라고 보여지는데 전시 편성을 하면서 지휘소 구성 여건이나 이런 것에서 증원요원이 들어오기가 조금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최대한 참석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최적화시켜서 저렇게 줄어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필수요원들은 다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식 위원 필수요원들은?

○국방부장관 서욱 예.

○강대식 위원 그래서 내가 최적화 인원이 몇 명이고 규모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계속 안 하시고 그냥 ‘최적화’ 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해도, 우리 연합작전훈련은 전시에 이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뜻이겠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국방부장관 서욱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하여튼 국방위원으로서 이때까지 궁극한 부분이었는데 장관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국민들도 든든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위원장 민홍철 더 드릴게요.

○강대식 위원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정석환 예, 병무청장입니다.

○강대식 위원 현역 판정을 받았거나 보충역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정석환 예.

○강대식 위원 이 부분은 둘 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소중한 우리 자원들이지요?

○병무청장 정석환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보료가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정석환 예.

○강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계속 노력을 해 왔지요?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병무청장 정석환 위원님께서도 입법활동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는 병무청과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데 기재부 설득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기재부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무청장 정석환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예산 자체는 12억 수준, 11억 5000만 원 수준만 있으면……

○강대식 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병무청장 정석환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리고 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현역 자원이다, 똑같은데 현역병은 건보료 다 지급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건보료 전액 지원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건보료에 대한 걱정까지 하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장 정석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마무리하시겠어요?

○강대식 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 위원 장관님께 아까 오전에 본질의할 때 드렸던 말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 진의가 충분히 전달 안 됐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군 여중사 사건이 생긴 이후 군의 많은 초급장교들, 부사관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과 통화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왜 그런 정도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 이하 우리 군의 간부들이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성과 너무 갭이 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 해군 여중사의 경우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이 부모를 만나서 확인한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만 32세의 미혼 여성이고, 32세인데 벌써 11년간이나 군 생활을 했고 강한 자부심과 고집을 가지고 평생직업으로 인생의 꿈을 여군을 통해서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차 가해를 입은 그 성적 수치심보다도 2차 가해를 통해 알려져서 자기가 승진 대상에서도 누락이 되고 또 앞으로 해군 조직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우리의 경우에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점을 미국의 SAPRO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미국의 SAPRO는 리스트릭티드 리포팅 시스템으로 지휘체계와는 전연 절연시켜야 됩니다.

여러 위원들이 ‘왜 지휘체계에 직보를 하지 않도록 했느냐’, ‘훈령과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지휘체계, 자기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순간 그때부터 2차 가해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단장이다, 제가 연대장이다, 인간의 본성상 당연히 일단은 없는 것으로 쉬쉬하고 싶지요. 그러다 보면 그게 2차 가해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특수한 영역이니까 기존 기무사가 운영되는 것과 비슷한…… 아니, 그 것보다 더 독립된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1차로 피해 신고를 그 기관에다, 미국의 SAPRO 같은 기관을 만약 우리 국방부에 다 만든다면 거기에 신고를 하면 전문가들이 탁 달라붙어서 잘못된 판단을 못 하도록 충분히 상담하고 의료적 지원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 가면서 가해자에 대한 것을 속기하고 조사해서 가해자를 징벌할 게 있으면 징벌하고, 그렇게 축적해서 다 치유시켜 놓고도 본인한테 5년 후에 ‘이것을 공개해도 좋겠느냐’ 하고 물어서 ‘나는 영원히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기록 자체를 파쇄해 버리는 것이 미국 SAPRO 시스템의 운영 줄기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책을 만들 때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히 여군으로 가는 참 아까운 인재, 공군의 이 중사나 해군 여중사나 인생의 꿈을 여기에 걸고…… 지난번 희생된 공군 이 중사는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이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직업군인으로서 꿈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잃어 버리게 됐으니까 거기서 오는 것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기성세대, 군의 위관장교들이 느끼거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 국방부장관께서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만들 때 좀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위원장 민홍철 예, 추가로 1분.

○김진표 위원 예, 바로 끝내겠습니다.

도산안창호함과 관련해서 핵잠수함 건설을 강조했던 것은 현대 국가의 군사력 건설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국익에 맞는 종합적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상의 상대가 남북이든 주변 국가든 어떤 선진국이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해군의 경우에는 차세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는 경항모와 함께 핵잠수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산안창호함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잠항기간이 최대 20일까지 늘어나도록 AIP(공기불요추진체계)도 있고 개선된 연료전지를 썼다고 하지만 그래 봤자 20일 아닙니까.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핵잠수함의 경우에는 에너지나 공기나 무슨 이런 것 때문에 부상할 필요가 없지요. 무제한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인데 다만 승조원의 피로라든가 다른 부품의 정비를 위해서 통상 운영체제가 한 10개월 정도에 한 번은 부상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의 기간을 갖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서의 비대칭 전략으로써 우리가 우위에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과 경항모가, 경항모는 우리의 해상 운송로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해상 화물의 1위 운송 국가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호위합니까? 그 경항모와 이 핵잠수함 이것이 해군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미래의 전략무기라는 차원에서 이런 점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정치권에도 홍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서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 경영에 있어서의 중요성, 경항모나 핵잠수함의 중요성을 해군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하고 협력해서 좀 많이 홍보, 협력하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위원님. SAPRO와 같은 제도를 이미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관이나 지휘관한테 보고되어서, 노출되어서 얻는 그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여군들한테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신고 전담기구를 포함해서 그 대응까지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국방부 전담기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우선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경항모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 이런 것 등은 미래 안보전략 환경을 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가 운영 개념, 국가 경영 개념에 입각한 미래에 대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논리 이런 것을 잘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성이 더 빠르게 노정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에서 SSB, 핵추진 탄도 잠수함체계를 개발하

겠다고 자기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던 말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진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모든 점에서, 조선은 우리가 세계 최대의 기술 강국입니다. 완전한 공간 설계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북한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비대칭 무기로 우리가 뺏긴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과 이것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의제로 올려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일종 간사님, 많이 질의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해군참모총장님, 8월 7일 날 해군 여중사하고 기지장하고 면담 있었고요, 그리고 기지장이 성추행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잖아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총장님,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저는 사실 8월 11일 아침 8시에 군사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8월 7일 날 기지장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총장님께서는 11일 날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기지장은 보고를 받고 사실은 7일부터 8일, 9일이 월요일인데 9일까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해서 기지장도 그때까지는 상담만 했고 정확하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월 9일 날 16시경 정확하게 피해 사실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자, 그러면 8월 9일 날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거든요.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으면 총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그것은 함대사령관 쪽에 즉각 보고를 했고 함대사령관은 작전사령관하고 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사고로 참모부 계통으로 사령관이 상급부대에만 현재 보고를 했고 참모계통을 통해서 해

군본부로는 양성평등센터에 보고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5월 27일 날 주임상사가 보고를 받고 이것도 인지하고 다 알고 있었는데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8월 7일 날도 기지장이 이것을 다 보고받고 9일 날 공식화해서 신고 접수해 달라고 그러니까 7일과 8일을 또 놓친 거예요,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9일 날에서야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총장님한테 보고받는데 11일까지 걸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세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 약간의 이런 보고가 느슨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금 세상을 떴거든요. 세상을 뜨게 한 책임이 지금 군에 있습니다. 지금 이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지금 해군이 한 것은 사고가 나니까 조사하는 것만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지 이게 사망 전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해미 전투비행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라고도 지금 현재 지휘계통이 제대로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8월 9일 날 공식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8월 9일 날 해 가지고 지금 11일 날에서야 총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이 보고체계를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총장님이 11일 날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장관님께서는 그 이후에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런 사건에 지금 현재 총장님이 중심에 서 있어요.

12일 날 사고가 났지요? 그러면 보고받으셨을 때 총장님께서 어떤 지휘를 하셨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 대응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그 피해 여중사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9일 날 야간에 평택으로 이송이 됐고 그다음……

○성일종 위원 자, 9일 날 이송한 것은 알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11일 날 보고 몇 시에 받으셨

어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아침 8시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침 08시지요? 그러면 이 사망이 12일 날 16시 정도에 확인된 것 아닌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1일 날 아침에 보고받으셨고, 12일 날…… 약 24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어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람이 딱 붙어서 어떻게 했는지, 이 중사가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이런 것 철저히 보고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그런 세세한 지시까지는 제가 조치를 못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정말 우리 군이 너무도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과 공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 사건을 한 번 경험을 하고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규정대로 하라고 다 지시를 내렸다고요.

그런데 예하부대에서 한 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나니까 그 이후에 조치는 빠르게 했지만 은폐한 것은 없지만 보호하는 이 여성에 대한, 이 망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안 했다는 거지요. 이라고도 국가가, 군이 타살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우선은 출도한 이후에 2함대에서는 숙소 마련 그다음에 성고충상담관 상담 그다음에 민간변호사 선임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상담도 했고 거기에 여성근접지원관을 붙여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와 관련되는 것 다 책임지세요. 그래야 그 이후에 책임을 맡게 될 지휘관들이 이런 지휘에 대한 영이 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도 해군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말이에요, 기지장부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세 부적으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경향모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면 지금 한미동맹 관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지요, 공간적으로?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게 한미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전력 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한미동맹의 관계는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그리고 여기 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모전단을 갖게 되면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미군과의 연합훈련이 원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더 타이트하게, 동맹의 관계가 좀 더 굳건하게 엮여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한미동맹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방기와 연루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큰 국가와 작은 국가의 동맹인데 그것은 그 관계 속에서 다 설정하면서 그 국익에 맞게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쿼드 같은 경우를 보면 쿼드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쿼드 플러스에라도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양을 대비해서 한미관계가 굳건하게 맺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단단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 한반도 전역에서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내가 볼 때는 이 항모전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생존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특히 한미관계가 더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항모의 전단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억제력하고 역내 평화 유지, 인도적 지원 이런 모든 것 등에 한미동맹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끈끈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리라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나는 정부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하고 함께 묶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동맹의 효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각도에서도 접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한 함대를 하나 갖는 이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통해서 더 넓은 연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항모의 필요성도 한번, 군사적인 측면 말고도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작년부터 일련의 방위사업과 관련해서 보안사고가 몇 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예.

○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위사업청 자체에서 아마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의 소송 관련된 보안사고가 재판 중에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송 관련 보안사고 관련해서는 아마 군에 재직 중이던 장교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업체에 제공했다는 건이 신고가 돼서 지난 6월 말 정도에 그 업체의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과 내용을, 기소장을 확보했고 내용을 깊게 검토를 했고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법무 검토 결과 절차를 밟아서 입찰참가자격, 그러니까 부정당제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판단해서 부정당제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9월경에는 계약심의위를 개최해서 부정당제재 여부를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심의위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방위사업을 현역 때 담당을 했다가 전역하면서……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장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저희 방위사업청 직원의 비리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역 장교들이나 그런 업무에 종사하다가 취업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편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런데 상당

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취업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위사업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고 전문지식을 또 활용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투명하게 해 주느냐 이렇게 열어 줘야 되는데 완전히 닫아 놓다 보니까 보안사고가 이렇게 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청에서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보안사고의 유형과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업체의 결정적인 요소에 미치는 내용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사안하고 사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미리 유출해서 난 사안하고는 조금은 차원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계급정년이 있는 장교들의 경우에 취업제한을 강하게 막아 버렸을 때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 게다가 소령들의 경우에는 45세에 전역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진급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문제, 특히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그런 장교들이 500명 이상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원으로 있는 장교들 중에서 상당수가 40대 중반에, 가장 가정을 위해서도 관리를 해야 할 그 나이에 직업 없이 나가는 문제는 저는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제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한 번은 열어 줄 수 있는 길을 논의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장관님,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줬는데 왜 거기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지요? 지금 한미훈련이 축소되고 이렇게 된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니까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지요. 한미훈련의 최적의 인원이 몇 명이나, 최적 수준이 얼마냐고 물었는

데 그것도 답변을 못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아까 띄운 것 그 것화면 한번 띄울 수 있나요?

한미 지휘소훈련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것은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미 지휘소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합참하고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구성군사령부가 구성이 돼서 주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정 규모지요. 거기다가 정부위원 측과 같이 결합하면 효과가 더 높은 것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또 군단급이 대응반에서 좀 더 많이 되면 더 효과가 높은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예하부대 분야별로 실기동훈련까지 하면 높아지는 것이고 최소한 합참과 연합사, 지상군, 해군·공군 특수전의 구성군, 한미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이 돼서 훈련을 하는 게 최소 규모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도표를 놓고 물음표를 해 놓고 저것을 말씀하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야당의 모 대선주자께서 ‘한미훈련은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책상에서 군인들의 컴퓨터게임으로 전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책상 앞에서 컴퓨터게임 하나요, 지금?

저기 보세요. 대부분 1만 명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년도 8월에는 5만 명이 됐던 것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북한의 핵·미사일로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최고로 끼었을 때이지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군이나 그러한 전쟁 위협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강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위원 측과도 결부됐고 미군들 2만 5000명도 다 훈련에 참가했고 미 증원 훈련도 더 많이 왔고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도 계속 1만 명 규모는 유지해 왔던 것이고. 이것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정부에서 해왔던 훈련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제가……

○김병주 위원 이번 훈련에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은 한미 비밀상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제가 그러면……

○김병주 위원 똑바로 하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제가 강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바에 답변하는 것이 보안상 어려워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이따 시간 좀 더 주세요, 저 질문거리가 많은데.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도표를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라고 하셔서 저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한미 연합훈련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휘소에서 하는 훈련 자체가 전시 대비해서 가장 최적화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연합사나 합참이나 각 구성군사에서 하는 훈련들이 있어서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것이 전시상황과 가까운 상황으로 묘사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훈련이 가장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컴퓨터게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훈련의 보조수단이잖아요. 지휘부에서 다 하는 것을 군단, 사단, 대대 이런 병력들 또 포탄 날아가는 것 못 하니까 그것을 묘사해서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하게 묘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인이 컴퓨터게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상황과 똑같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좀 이해를 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안감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질문했었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저는 국방부가 지금 아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해부대에서 그렇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조치들이 제대로 안 보인다고 봐요.

7월 12일 날 신병교육대 들어오기 전에 백신 맞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지금 몇 % 정도 접종하고 들어오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까 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1주 차에는 0.3%였고 7월 4주차에는 1%, 8월 1주 차는 2.5%, 8월 2주 차에

31%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매주 체크를 해 보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7월 12일 날부터 맞기 시작했으면 1차 접종하고 한 3주 이렇게 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텅을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유도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그 고민을……

○김병주 위원 아까 병무청장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병무청보다 국방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은 장기화될 테니까 지금 좀 더 과도하리만큼 준비하라고 해서 음압구급차를 좀 더 갖추라고 했는데 작년 대비 지금 몇 대 더 갖췄나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저희가 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진도가 늦잖아요. 음압병상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감염병 전문의는 작년보다 몇 명 더 늘어났어요? 거의 안 늘어났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밑에, 국방부에 작년에, 군의관 1명도 국방부 조직 내에 지금 없잖아요. 간호장교 1명만 있잖아요.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코로나 전쟁인데 군의관을 참모로 두고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청해부대에서 항체진단키트 그것 항체와 항원이 있는데 잘못 갖고 간 것도 사실은 군장검사를 제대로 못 한 면도 있지만 지식이 좀 부족한 거지요. 참모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국방부에는 사실은 국방부장관이 군의관 1명을 참모로 데리고 쓰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령관이……

○김병주 위원 평소는 아니지요, 평소는.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전쟁인데……

○국방부장관 서욱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사령관이 저를 밀착해서 참모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병주 위원 의무사령관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동원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모든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데 왜 군에서만 동원훈련을 못 하나요? 작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동원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고 하는데도 지금 2년 동안 훈련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안 할 건가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하면서 비상근 예비역 제도……

○김병주 위원 최적의 안이 훈련 안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모여서 동원훈련 하기가 상태가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지요. 지금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전원이 PCR 검사를 갖고 가야 비행기를 타지요. 제가 해외출장갈 때 비행기 타니 안전하더라고요. 왜? PCR 검사를 갖고 왔으니까.

훈련하기 전에 PCR 검사를 갖고 오게 하고 또 앞으로는 백신을 좀 더 동원훈련병들에게도 받게 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청해부대 하나로만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따져야지.

○국방부장관 서욱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음압구급차는 9대 확보했고요 음압병상은 작년에 112개, 현재는 150개 증가한 262개 음압병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는 연합훈련이고 이런 것에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이런 것에도 청해부대 일어난 그것만 국한하지 말고 진정으로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국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추경 심사를 계속 해 보면 한 번도 추경에 국방부 예산이

추가된 적이 없어요. 국방부만큼 3밀 환경 속에서 코로나에 취약한 조직이 없는데도 그것을 반영을 안 해요, 오히려 삭감하고 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님이 야당 위원인 줄 알았어요.

해군이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이지스함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항상 출동해서 탄도를 확인하고 하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또 2024년도에 될 광개토-Ⅲ Batch-Ⅱ 여기에는 실제로 레이더는 마찬가지로입니다만 대탄도유도탄은 무엇을 씁니까?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한기호 위원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무엇으로 가느냐고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 아직도 결정 안 했지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사드 배치를 할 때 북한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중국에서 난리를 피웠어요. 이게 SM-3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사드하고 같이 연관돼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SM-3 가는 것이 왜 방해를 받습니까? 그리고 방사청에서 권한을 넘어서 L-SAM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본래 방사청은 합참의장에게 성능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무기체계 자체를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SM-3에 대해서는 KIDA, ADD 여기서 전부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L-SAM으로 바꾸라고 지금 했어요.

L-SAM과 SM-3하고 차이가 월등하게 납니다. 이게 우리 함정에다가 탑재할 때는 360도 방향 어디든지 전부 다 해야 돼요. L-SAM은 지상용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방향 쪽에밖에 못 해요.

해군총장님,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해군도…… 제가 이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해군한테 받았어요. 해군에서도 SM-3가 탑재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방사청이 나서서 지금 바꾸는 작업

을 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사드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정이가 주문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아니라고 당연히 대답해야지요. 장관님이 기라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안 되지요.

지금 실제로 레이더는 1000km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게 L-SAM이 들어간다고 하면 L-SAM이 개발 완료돼서 우리가 탑재하려면 몇 년도에 돼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저 방사청장……

○한기호 위원 해군총장이 얘기해 보세요. 방사청장님이야 무조건 변명하지.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아니, 변명……

○한기호 위원 해군총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건조 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203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함들이 운용돼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4년이지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그때부터 건조돼서 제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30년도까지 이 배를 건조하지 않을 겁니까? 그 전에 배는 띄우지요? 배는 띄우는데 레이더는 있고 쏠 수 있는 주먹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려요? 방사청장님 자꾸 마이크 잡지 마세요. 묻지 않았어요.

아니, 레이더는 있는데 그 레이더에 포착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 이거예요. 누구 말처럼 ‘에스까 노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하는데, 한반도 상황에 북한의 탄도탄 요격할 수 있는, 요격이 필요한 그러한 무기체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방사청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간 단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청이 지금 UH-60 성능 개량하는

데도 똑같이 KAI하고 짜고 수리온으로 바꿔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L-SAM은 지금 실제로 함정에, 이지스함에 올리려면 부적합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지상용으로 개발한 것을 어떻게 함정에 올리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발언할 기회는 안 주시지요?

○위원장 민홍철 계속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역시 위원장님 마음에 들어요.

국방부가 급식제도 개편하는 것 저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을 벤치마킹했다는데 여기에 경약을 급치 못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은,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학교가 급식하는 것은 부대 단위로 하듯이 학교별로 달라요. 그 학교에서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예를 들어서 5군단 그러면 5군단 지역에 있는 우리 메뉴가 어찌 보면 우리 군은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해요, 군단 단위로. 그러면 학교급식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급식에 비유해서 학교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상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급식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 지역의 양구하고 화천 두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농협이 조달할 때하고 업체가 할 때하고 다릅니다. 업체가 할 때는 업체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 기름 값도 급식비에서 나갑니다. 농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낙후된 식품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다음에 장관님은 급식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한기호 위원 지금 급식과 관련된 법안이 몇 건이 올라와 있냐 하면 여기 보니까 5건이 올라와 있어요, 군 급식에 대해서. 그런데 장관님은 급식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있어요. 왜? 급식을 해야 될 조직이 조달청으로 가 버렸어요. 이 급식을 내년도까지만 가격과 품목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것 하면 내년부터는 조달청에서 합니다.

세상에 우리 장병 먹을 것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이러한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조달청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미……

○한기호 위원 현재 그렇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이미 의사결정이 되어서……

○한기호 위원 그래서 원위치시켜야 돼요. 옛날에는 조달본부가 있어서 조달본부에서 군의 급식, 피복 이런 소모품들을 전부 조달했어요. 그때는 빨랫비누, 세숫비누, 치약 이런 것까지. 그러다 구매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는 급식하는 것과 피복 종류만 남았어요. 그것마저도 국방부가 안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게 국방개혁입니까? 방사청에서 떼어 놓으려고 빼 놓은 겁니다, 국방개혁으로. 그래서 국방개혁이 아니고 국방 개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먹는 것까지 남의 손에 맡기는 이런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할 텐데 반대하지 마십시오, 국방부가. 예? 반대하시지 말라고요.

○국방부장관 서욱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은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항공대, 지금 대구에 있는 비행장은 옮기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 항공, 헬기 비행장은 그렇게 추진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군의 비행장이든 육군의 비행장이든 동일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기부대양여라면 국방부가 수용해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맞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저희 군사작전에 부합해야 되겠지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불편하다면, 최소한도 A 지자체라면 그 A 지자체 안에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동일한 규모로 비행장을 건설해 주고 그리고 기부대양여를 한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요구를 하는 곳이 춘천, 소양댐 바로 밑에 있는 항공대를 이전해 달라고 기부대양여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얘기가 '기부대양여를 국방부가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식

으로 얘기하는데 동의 안 하시는 것 아니지요? 조건이 맞으면 기부대양여를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군사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대양여는 그것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면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와 계십니다. 그런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아무도 안 와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 하는 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 편성해 줄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확인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또 돈 쓴 결과를 확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겁니다.

실제로 쓴 돈을 확인해 보면 목적 외 사용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 이분들이 내부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또 특근매식비를 과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시간 이전에, 위원장님이 출근을 하기 2시간 이전부터 일을 했다, 그러면 몇시? 7시부터 해야 돼요, 9시에 일과 시작하니까. 이런 경우에 밥을 굶으니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준 돈인데 이것마저도 엉터리로 쓴 거예요. 전부 어디서 먹었느냐? 한우마루에서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도 우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군인들 퇴직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내용을 아시나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서욱 예, 보고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이것은 장관님한테 자료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했느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군인들한테 지급하지 않는 돈이 있지요? 정상적으로 주던 것을 지금 안 주는 것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

○한기호 위원 연가보상비를 안 주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한기호 위원 연가보상비가 연금에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안 주다 보니까 이것을 안 주는 것만큼 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준장이 전역을 해서 나갈 때 4월 전역자하고 5월 전역자하고 매달 3만 2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연금이. 또 퇴직수당 일시금으로 주는 건 161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전역한 사람하고 늦게 전역한 사람하고. 늦게 전역한 사람이 돈을 덜 받습니다, 군대 생활을 더 했어도.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방예산에서 돈을 잘랐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안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연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금을 최소한도 정상적으로 맞춰는 줘야 돼요. 어떻게 줄입니까, 군대 생활은 더 했는데?

○위원장 민홍철 마무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기호 위원 이것은 기재부하고 협조해서라도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안이 됐는데요.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 방안을……

○한기호 위원 다른 공무원은 안 해도 군인연금은 연금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군인들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구체 방안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장교들의 훈련기간도 연금에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관을 해야 연금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봐야 될 겁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임관 전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민홍철 예, 임관 전 교육훈련. 아마 그것은 일반 장교들은 가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관생도들은 아마 분할해 가지고 가산이 되거든요.

다음은 추가질의 신청해 주신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 위원 병무청장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작년에 출범을 했지요?

○병무청장 정석환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보니까 여기에 물론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불용액이 한 40% 되고 올해 집행률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액수는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은 안 하겠는데 결국 회의수당이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불용 처리된 회의수당이 다른 용도로, 비품 구입이라든지 일반운영비로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 해서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아마 지적 사항이 될 겁니다. 사업 실적 대비 과도한 집행도 있고 또 목적 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크게 큰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이달의 우수조사관’ 이래서 시상식 명목으로 매월—돈은 크지 않아요—1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가지고 줬는데 이 역시도 선정 방식이 또 잘못됐거든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로 이루어진 것도 잘못됐지만 더 큰 문제는 업무추진비가 집행 지침상으로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성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

○병무청장 정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지침에 맞게 집행토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 횟수는 사실은 1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회의 산정을 좀 과다 산정을 해서 회의비가 좀 과다 계상이 됐고 그래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 정도 감액해서 회의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과다 책정된 부분이야 내년 예산에서 좀 줄이면 되는데 목적 외 사용되는 거라든지 지침상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은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장 정석환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현역 시절에 군인공제회에 기여금 납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

우리 직업군인들이 군인공제회에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계급정년과 같은 군 조직의 특수성이란지 또 지금 정년이 짧기 때문에 군인공제회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여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강대식 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성동조선해양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16년 동안에 총 15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한때 성동조선해양이라는 곳의 지분율의 한 44.6%를 우리 군인공제회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고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계속됐고 결국 2018년도에 이게 법정관리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 군인공제회 투자금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돼 버렸어요. 지난해 말 기준 1139억 원이었던 투자금 중 37억 원만 돌려받은 채 군인공제회는 성동조선해양 투자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군인공제회의 투자 실패는 결국은 우리 퇴역 군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게 악화된 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장관님께서 이 점 유념하셔서 군인공제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군인공제회의 성동조선 투자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인공제회 자본잉여금이 7000여억 원으로 현재는 재무구조가 안정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감독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투자해 가지고 계속 자산을 늘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날린다 하는 것은 지금 기여금을 냈던 우리 퇴역 군인들이 얼마나, 걱정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16년도부터 5년 동안 흑자 경영하고 있다고 저한테……

○강대식 위원 흑자 경영은 조금 하다가…… 그래서 자꾸 투자금액을 늘렸지요. 결국은 완전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39억 원 중에 37억 밖에 못 건졌어요. 법정관리로 들어가 가지고 법원의 화해로 인해 가지고 저 정도밖에 못 건지고 전부 다 휴지조각으로 날려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일종 위원 예.

○위원장 민홍철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성일종 위원 좀 띄워 보세요. 크게 좀 띄워 볼 수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것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방금 주셨어요. 그래서 군에서 32사단에다가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공고가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477개 항목 중에서 약 92개, 20% 정도가 외국산이에요. 고구마·감자에서부터 돈육·고기까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상시를 대비하는 건데 이러한 제품을 다 중국산으로 채워 가지고 물품 구매를 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저렇게 항목이 지금 공고 난 것 중에 중국산 내지는 베트남산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자인데 전쟁 중에 중국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물건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군은 최후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에서도 조달이 가능해야 돼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구매하는 문제도 있지만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품질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식자재나 이런 것 납품하면서 민간인 업자들이 너무도 부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이것을 구매했던 거잖아요.

다시 이것을 민간으로 내려 가지고 저런 구매로 한다 그러면, 이번에 92개 품목을 외국산으로 저렇게 스펙을 박아서 해 봤는데 군이 이거 알 수 있었습니까? 나는 업자가 와서 저런 것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전투력 저하가 예측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급식이 문제가 되니까 군에서 어떻게 하든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데, 군의 급식과 관련해서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구매 단계예요. 어떻게 신선하고 좋은 퀄리티 높은 상태의 제품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군의 첫 번째 임무고, 이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요리할 거냐, 그래서 병사들을 어

떻게 훈련시키고 맛있게 요리할 것인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떻게 배식할 거냐, 배식을 골고루 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그런데 원자재를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다 구입하고 재배해서 예측 가능하게 들여올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배식에 실패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문제로 삼고 하니까 내놓은 게 외부에서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장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는 업자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농협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사 주면, 그 이득이 남으면 농민한테 배당금으로 가게 되어 있는 선순환 구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품질 좋은 것을 제때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조달받을 수 있는 것은 군의 가장 중요한, 구매하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군수본부장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군수본부장 나와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오늘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참모들을 못 데려왔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질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받기 싫다 그러면서 다 풀어 가지고 중국에 장사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무기 하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무기 다 오픈해 가지고 다른 나라 거 사들일 겁니까,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먹는 문제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챙기셨으면 하고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이것은 현재 완전하게 정착시키시는 게 아니고……

○성일종 위원 시범사업입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고……

○성일종 위원 시범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들도 다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매 단계는 제일 신선하고 좋은 것을 상급으로 제때 공급받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중시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농협에 의해서 해 온 건데 이게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군장교들이 부족하지요? 또 지원율도 상당히 낮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성일종 위원 일반 병사는 18개월인데 학군장교들은 28개월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24개월로 낮춰 주셔야, 그래도 몇 개월 더 하는데 장교니까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급장교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24개월로 검토를 해 주세요. 육군에서는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도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26개월이나 24개월이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6개월로 하려면 아예 28개월로 그냥 놔 두세요. 초급장교들 가지고 2개월 줄여 주면서 인심 쓸 수가 없다고요. 제도가 한 번 바뀔 때는 제대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정리 되면 저희 방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지 않아도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군 급식제도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농협과의 관계, 축협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들여다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시범 적용을 하면서 나중에 의견들을 다 수렴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학군장교들, 우수 자원을 모아서 초급장교들이 강해야 창끝 전투력이 강해지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적정 인원의 초급간부가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이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민홍철 예.

○성일종 위원 장관님, 또 하나는 지금 3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육사·해사·공사 그리고 3사관학교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월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ROTC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기 지원자, 이 사람들도 입영할 때 이외에는 생활비가 지급이 안 돼요. 막사 안에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모든 것을 다 해 주면서도 월 생활비를 주는데, 장기 지원한 ROTC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생활비가 지급이 되어야 돼요. 국가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쓰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똑같이 3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이 사관생도들은 장기 지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학군의 장기 지원자들도 똑같은 지원 조건으로 해 줘야 인재를 더 쉽게 확보할 수가 있지, 지금 3사관학교까지 장기 지원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82만 원에서 96만 원인가요, 그 정도 주고 있던데 지금 ROTC 장기 지원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활비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청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태워 보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인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염병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구조로 돼 있는 데가 군이지요. 왜냐하면 3밀 환경이기 때문이지요, 밀집·밀폐·밀접 환경 속에서.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과도하리만큼 앞으로 이것은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오게 되면 전염병 관련 예방접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신교대에서?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병주 위원 어떤 종류를 하고 있지요? 파상풍이라든가 A형 간염, 수막구균염,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는 데 얼마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한 이삼 주 걸리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한 2주에서 4주 걸리는데 이것도

시스템을 코로나 백신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꼭 신병교육대에 들어와서 할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관장을 해서, 입대 1개월 전에 입영 판정검사 하잖아요. 그때 입영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된 예방접종을 하면 군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항체가 형성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전염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무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청장 정석환**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병무청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병역판정검사장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입법 개정 사항이 필요하고……

○**김병주 위원** 입법이 필요하면 이 기회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 장병들의 입소와 동시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정부입법으로 하든 국회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할 테니까 생각의 폭을 좀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무청장 정석환** 예.

○**김병주 위원** 휴가자들은 휴가 복귀할 때 PCR 검사를 하고 오나요, 장관님? 휴가 복귀자들, 병사들 복귀할 때 PCR 검사를 하고 읍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하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휴가자 복귀하면 1주, 2주 격리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비행기를 탄다든가 이런 것 할 때처럼 PCR 검사를 복귀할 때 해서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군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PCR 검사 해서 음성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사회와 연계된 시스템으로 해야 병사들이 고충이 없는 가운데서 적응이 될 테니까 그것도 그렇게 확보를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한미훈련에 대해서 좀 큰소리를 쳤는데 지금 사실 군은 코로나19상 또 4단계 이런 악조건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다 백신도 맞고 한 곳에 묵지 않고 여러 군데 이격해서 하기도 하고 또 훈련 중간에는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이런 노력을 현재 하면서 아주 거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군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훈련을 제대로 안 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고 또 안보에 대해서 불안

해하니까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서 알려 줄 것은 알려 주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예요. 그것을 안 알려 주니까 군이 이러한 환경 속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설명에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급식문제가 지난번에 터져서 제가 예산을 쭉 봤더니 민간조리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장병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간조리원 채용도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조리원 채용 기준이 지금은 식수 인원 80명 이상 취사장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57개 부대가 아직도 미배치되어 있고 또 민간조리원들이 중도에 퇴사를 하고 그만두는 일이 많고 신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민간조리원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대우나 예우 같은 경우 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조리원들의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사실은. 또 격오지까지 가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급식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아까,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PCR 검사를 휴가 갔다가 복귀할 때 외부의 선별검사소나 이런 데 들어서 최대한 하고 그게 정확히 안 났을 때는 부대 내의 검사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휴가 복귀할

때 한 번 하고 또 군에 들어와서 가까운 데 가서 바로 하면 하루만 격리시켜도 문제가 없지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병사들의 복귀가 안전하면서도 임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성일종 위원님, 또 추가하실 게 있다고요?

○성일종 위원 하다가 좀 빠졌습니다.

장관님, K-9 자주포가 폭발해서 4년 전에 사망자들이 좀 났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성일종 위원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 추모행사가 연기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4년 전 여기에 생존 장병도 있고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지금 현재 참석을 못 하게 하고 취소한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같은 장소입니다, 대전현충원. 그러면 홍범도 장군께서 오셨을 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시니까 이 행사를 해도 되고, 사람이 모여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K-9 자주포, 4년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소중한 생명들과 함께했었던 동료들과 부모들이 있는데 이 행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국방부장관 서욱 못 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기호 위원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못 하게 하는 거지.

○국방부장관 서욱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마는 그렇게 지시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지금 못 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연기했으면 다시 추모행사 꼭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취소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취소하지 말고 다시 유족들의 뜻을 한번 모아서 행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성일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왔을 때 했잖아

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것을 못 했다고 한다면 살아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천안함 전우들 또 연평해전 전우들을 포함해서 매 그 계획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항상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 개념으로 보면 이 행사는 당연히 해서 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1월 20일 날 의결을 했는데요. 아마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군 장학생 출신 장교 전역 제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부안을 입법 준비하고 계실 건데 군 장학금을 받거나 연장 복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수혜를 받은 장교들 중간 전역의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5년 내지 7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중간에 전역할 때 지금까지는 허용을 안 했는데 중간 전역을 허용하되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공무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이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더 문제가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 한 이후에 임관한 장교들만 적용하겠다는 이러니까 기존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서 어느 모 대학교에다가 사이버학과를 창설해서 채용한 장교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장관님께서 살펴보고,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들에게도 적용을 해 줘야 형평성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아 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잘 알겠는데요. 입법예고가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됐고……

○위원장 민홍철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다음에 차관회의가 끝났고 국무회의 직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 급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민관군합동위원회 위원장도 뵙고 농민이나 어민들로부터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농협이나 수협으로부터도 많은 의견도 듣고 있고요. 한기호 위원님이나 성일종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구동성입니다. 왜냐하면 군 급식은 매우 중요하고요, 학교 급식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성상 전방과 후방이 다르고요. 민간의 케이터링 업체에다가 주더라도 전방과 후방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학교 기관을 포함해서 사령부나 대규모 부대와 소파견지가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병사들이, 장병들이 가장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 가장 최고의 급식을 받는다는 게 원칙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로 농어민을 지원해 주는 목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취사병을 없애고 민간조리사로 하고 케이터링 업체에다가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큰 원칙은 지켜 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1차 농산물 식재료 이 부분은 안정적이고 균질 있게 조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정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케이터링 업체에 모두 맡겨 가지고 조달해서 조리를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될 걸로 봐요. 그러면 음식의 질도 다 다를 겁니다, 각 부대별로. 왜냐하면 그 업체가 조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식재료는 우리 농산물을 쓰고, 가공식품 말고요. 1차 식재료는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쓰고 균질 있게 조달을 하되, 업체가 조달하면…… 왜냐하면 그

대상이 비싸지면 싼 걸로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 농산물 식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현재 조달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관급자재처럼, 건설업 할 때도 보면 공공발주 할 때 공공기관이 자재를 사서 그 업체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형식처럼 1차 농산물은 국방부나 조달청이 통합 구매해서 그 업체한테 배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식재료가 균질이 있고 최상의 품질의 재료를 우리 장병들한테 먹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아마 제시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면서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폭력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책과 제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매뉴얼과 지침이나 처벌 근거를 마련해도 실천과 의식의 공유화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그런 우리 군 조직 내의 의식의 공유화 그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했는데 어떤 계통으로든 신고를 하면, 하소연을 하면 반드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믿음 이게 반드시 전체 군 조직 내에 형성이 되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경우에는 보면,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서로 부대별로 결의대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어떤 점호를 하면서 이런 다짐의 행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이론에는 일반예방 효과라는 이론이 있고요, 특별예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일반예방 효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다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9항까지 6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70항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1항 2020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설훈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본 위원, 이상 아홉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이 성일중 간사님을 비롯해서 강대식 위원님 또 한기호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욱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부석중 해군참모총장님, 정석환 병무청장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 대 식	기 동 민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주	김 진 표	민 홍 철	설 훈
성 일 중	신 원 식	안 규 백	이 채 익
하 태 경	한 기 호	홍 영 표	

○청가 위원(1인)

황 회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윤 재 갑 전 용 기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선 준
전 문 위 원	조 문 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 관	서 욱
기 획 조 정 실 장	한 현 수
국 방 정 책 실 장	김 만 기
인 사 복 지 실 장	김 성 준
계 획 예 산 관	이 영 빈
법 무 관 리 관	유 재 은
민관군합동위원회 지 원 T F 장	박 원 호

병무청

청 장	정 석 환
기 획 조 정 관	김 종 호

방위사업청

청 장	강 은 호
기 획 조 정 관	강 환 석
합 동 참 모 차 장	윤 의 철
육 군 참 모 차 장	황 대 일
해 군 참 모 총 장	부 석 종
공군참모차장직무대리	신 옥 철
해 병 대 부 사 령 관	백 경 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 선 태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2021. 7. 7. 배진교·강은미·김홍걸·류호정·민형배·소병훈·심상정·양정숙·이은주·장혜영·조오섭 의원 발의)

7월 22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양정숙·강민정·김성주·김수홍·서영교·용혜인·윤준병·이상헌·이용빈·조오섭 의원 발의)

7월 27일 회부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김도읍·김태흠·윤한홍·태영호·권영세·이현승·추경호·양금희·조수진·

신원식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김도읍·김태흠·윤한홍·태영호·권영세·이현승·추경호·양금희·조수진·신원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국가지리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설훈·윤영찬·허영·민형배·오기형·용혜인·김진표·윤재갑·김의겸·이용우·전용기·윤미향 의원 발의)

8월 3일 회부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강대식·조수진·허은아·金炳旭·백종현·김용판·유상범·태영호·정찬민·류성걸·김영식·한기호·양금희·이명수 의원 발의)

8월 4일 회부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진성준·천준호·소병훈·박상혁·김두관·김정호·우원식·조오섭·진선미·허영·이규민·이동주·김원이·이해식·이학영 의원 발의)

8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양정숙·강민정·김수홍·안호영·위성곤·윤준병·이상헌·이용빈·이장섭·조오섭 의원 발의)

7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김병주·김승원·홍성국·김남국·기동민·이용빈·홍기원·이광재·임호선·정일영·이규민·김민기·윤영덕 의원 발의)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기동민·김병기·한준호·강병원·임종성·권인숙·임호선·용혜인·김민기·홍기원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장제원·박성민·백종현·안병길·

윤두현·윤한홍·이명수·이태규·지성호·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강대식·정찬민·김영식·김용판·허은아·金炳旭·류성걸·태영호·이명수·양금희·백종현·한기호·전주혜·유상범·조수진 의원 발의)

8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이수진·이형석·이성만·임오경·김종민·이규민·박재호·이용빈·박상혁·장선우·장철민 의원 발의)

8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